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학석사학위논문

사용자중심설계 기반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활용한 범죄예방 모델 연구

A study on the crime-prevention  
based on the user-centered design  
using the location information of ankle monitor

2016. 2.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디지털포렌식학

김 유 호

사용자중심설계 기반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활용한 범죄예방 모델 연구

A study on the crime-prevention  
based on the user-centered design  
using the location information of ankle monitor

지도교수 이 중 식

이 논문을 이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1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디지털포렌식학

김 유 호

김유호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01월

위 원 장 이 효 원 (인)

부 위 원 장 이 중 식 (인)

위 원 백 윤 홍 (인)

## 국문 초록

전자감독(일명 전자발찌)제도는 특정 성폭력범죄 환경에 대응하고자 2008년 9월 1일 특단의 대책으로 도입되었다. 시행 초기 3년간은 매년 1% 미만의 재범률을 보일만큼 전자발찌착용자의 범죄 억제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2011년 이후로는 전년 대비 매년 큰 폭으로 재범률이 상승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에 대한 원인으로는 대상 범죄의 확장에 따른 전자발찌착용자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 인력이 효율적으로 충원되지 못한 이유와 전자발찌 착용 상태에서의 범죄나 훼손 후 범죄의 경우처럼 처벌을 각오하면서 범죄로 나아간 경우에는 국가가 선제적으로 이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 범죄예방 기능이 약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한계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재범률 상승이라는 부정적 현상은 해결되지 못하고 국민의 안전에 위해요소로 상존하면서 최근에는 제도의 무용론까지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가 흉포한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한 고비용의 제도가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국가 경제적으로 손해인 것은 당연하고 그 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다.

모두가 주지하듯이 범죄는 예방이 최선이다. 그 이유는 한번 발생한 범죄의 피해는 결코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정 범죄자가 범행을 결의하고 대상을 물색하는 단계에서 잠재적 범죄피해자인 시민이 스스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선

제적인 범죄예방 모델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용자중심의 범죄예방 모델에 관한 연구는 헌법적 가치 충돌의 문제와 실정법적 한계를 지닌 현 상황에서도 개념적으로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념의 틀을 벗어나 범죄예방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지금까지 범죄자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잠재적 범죄피해자인 시민(사용자)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중심의 범죄예방 수단을 보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특정 범죄자의 재범위험으로부터 시민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부족한 보호관찰관의 업무량 경감과 효율적 업무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전자발찌 본연의 기능과 더불어 범죄자가 재범을 결의하는데 심리적 가중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특정 범죄자의 재범 억제에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하여 정부 소관 부처가 향후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시도해야만할 때 그 중 하나의 연구과제로 채택할 기회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이 논문을 작성한다.

❖ 주요어 : 전자감독제도, 전자발찌제도, 전자발찌 위치정보, 사용자중심 설계, 전자발찌 재범률, 범죄예방

❖ 학 번 : 2014-24855

# 목 차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소개 .....	5
<b>제2장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b> .....	<b>7</b>
제1절 전자감독제도의 도입 배경 .....	7
제2절 제·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	9
1. 제정 법률의 주요 내용 .....	9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	9
1) 제1차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 .....	9
2) 제2차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 .....	10
3) 제3차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 .....	10
4) 제4차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 .....	11
3. 현행 법률의 주요 내용 .....	13
1) 전자장치 부착의 유형 .....	13
2) 전자장치 부착 기간 .....	17
3)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	18
4)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	19
5)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정보보호 .....	20
6)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재사회화 .....	22
제3절 전자감독제도의 의의와 목적 .....	23
1. 전자감독제도의 의의 .....	23

2. 전자감독제도의 목적 .....	24
3. 전자감독제도의 운용 현황 .....	25
제4절 전자감독제도 시행 경과 .....	27
1. 전자감독제도 시행의 성과 .....	27
2. 현행 전자감독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	28
1) 현행 전자감독제도의 문제점 .....	28
2) 현행 전자감독제도의 한계 .....	30
3. 전자감독제도 개선의 필요성 .....	31
<b>제3장 전자발찌 관련 국내 선행연구 및 외국의 운용 사례 소개</b>	<b>33</b>
제1절 국내 선행연구 사례 .....	33
1. 국내 동종 선행연구 사례 .....	33
2. 국내 이종 선행연구 사례 .....	36
제2절 외국의 운용 사례 .....	39
<b>제4장 사용자중심설계 기반 범죄예방 개념 창안과 도입</b>	<b>42</b>
제1절 사용자중심설계의 의미 .....	42
제2절 사용자중심설계 기반 범죄예방 개념 창안·도입 .....	43
제3절 사용자중심설계 기반 범죄예방 개념 도입의 의의 .....	46
<b>제5장 사용자중심설계 기반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활용한 범죄예방     모델 연구</b> .....	<b>49</b>
제1절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디지털디바이스를 이용한 전자발찌 위치정보 활용 .....	49
제2절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용자중심 범죄예방 모델 설계 .....	50

1. 기본 설계(지도기반 전자발찌 위치정보 공개) .....	51
2. 확장 설계(위험회피를 위한 다양한 표시방식 솔루션) .....	52
3. 요청기반 설계(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전자발찌 위치정보의 선택적 노출에 관한 솔루션) .....	57
제3절 전자발찌 위치정보 활용 디자인 고려사항 .....	59
1. 정보의 구체성과의 관계 .....	59
2. 정보의 양과의 관계 .....	60
<b>제6장 사용자중심설계 기반 전자발찌 위치정보 활용에 대한 예상 쟁점 및 관련 기존 제도의 도입 논거 소개 .....</b>	<b>61</b>
제1절 사용자중심설계 기반 전자발찌 위치정보 활용에 대한 예상 쟁점 및 기존 전자발찌제도의 도입 논거 .....	63
1. 헌법적 쟁점 .....	63
1) 인권침해의 문제 .....	63
2) 이중처벌금지 및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등 기타 위헌성 문제 ..	67
2. 법률적 한계 .....	73
제2절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전자발찌 위치정보 공개 대상자의 엄격한 선정기준 .....	75
1. 전자발찌착용 후 재범자 .....	75
2. 전자발찌 의미 이해 불능 대상자 .....	76
3. 초고위험 전자발찌착용자 .....	77
<b>제7장 결 론 .....</b>	<b>78</b>
참고문헌 .....	82
Abstract .....	86



## 그림 목차

<그림 1>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작동원리 .....	26
<그림 2> 정기혁의 논문에서 제안한 개념도 .....	34
<그림 3> 정기혁의 논문에서 제안한 실행 화면 .....	35
<그림 4> 지도기반 전자발찌 위치정보 공개 .....	51
<그림 5> AM의 position 표시 .....	52
<그림 6> 거리 표시 .....	53
<그림 7> 거리에 따른 위험의 구별 표시(200m) .....	54
<그림 8> 거리에 따른 위험의 구별 표시(100m) .....	55
<그림 9> 거리에 따른 위험의 구별 표시(50m) .....	56
<그림 10> 정보의 구체성과의 관계도 .....	59

## 표 목차

〈표 1〉 전체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률(2008-2010) .....	27
〈표 2〉 전체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률(2008-2014) .....	28
〈표 3〉 범죄예방설계의 틀 .....	48
〈표 4〉 정보의 양과의 관계도 .....	60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sup>1)</sup>

### 1. 연구의 목적

우리 사회 일반에서 전자발찌제도<sup>2)</sup>로 더 널리 알려져 있는 전자감독제도가 2008년 9월 1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국내에 처음 도입되어 운용된 지도 벌써 7년이라는 짧은 세월이 흘렀다.

당시 특정 성폭력범죄 환경에 대응하고자 지나간 사회적 진통 끝에 특단의 대책<sup>3)</sup>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시행 초기인 2008년부터 2010년

---

1) 이 부분의 내용은 각 본장에서 관련 자료의 제시와 함께 다시 상술하기로 한다.

2) 법무부에서 사용하는 제도의 공식 명칭은 전자감독제도(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인터넷 홈페이지 - 보호관찰 - 전자감독 부분 참조, <http://www.cppb.go.kr>)이나 우리 사회 일반에서는 전자발찌 제도로 더 널리 사용되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해 각 명칭을 혼용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3) ‘특단의 대책’이라는 표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엿 볼 수 있는 연구자료 중, 김지수·김민곤·이정철·허만형,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형성과정 분석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model)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21권 제1호(2012. 3.), 252의 내용을 보면,

「2006년 2월 한반도는 연일 보도되는 아동성범죄 사건으로 들썩이고 있었다. 범죄의 방식이 잔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초등학생 아동들이었다는 점은 전 국민을 분노에 휩싸이게 하기 충분했다. 특히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살해범(2006. 02. 19.)이 재범자임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정부가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압박을 느끼면서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unclear technology, 불명확한 기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충분한 정보도 제공되지 못했다. 그 결과 정책결정자들은 빠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어떤 대안이 최선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범죄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보호라는 2가지 중요한 가치 중 어떤 것을 얼마나 더 우선시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problematic preference, 선호의 불확실성). 게다가 다양한 인권단체와 정부관료,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아동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등장했다. 그들은 중요한 의사결정자로 나타났다가 침묵하고, 때로는 입장을 바꾸는 등 일관되지 않고 복잡한 행태를 보였다(fluid participation, 유동적 참여).

이렇게 불확실하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나라당은 사건 보도 직후인 2006년 2월 그간

까지는 1% 미만의 재범률을 보일 만큼 실제로 전자발찌착용자의 범죄 억제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이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전년 대비 매년 큰 폭으로 재범률이 상승하여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 문제점과 비난이 쏟아지고 최근에는 제도의 무용론까지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우리가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 흉포한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국가 경제적으로 손해인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그 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다.

모든 사람들이 주지하듯이 범죄는 예방이 최선이다. 그 이유는 사후 대책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한번 발생한 범죄의 피해는 결코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나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한 고비용의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방치되어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전자발찌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에 투입된 사회적 비용의 효과를 증대하여 본질적으로는 범죄예방에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전자발찌착용자의 위치정보를 개인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디지털디바이스에 Application 형태로 제공하여 일반시민 누구나 쉽게 전자발찌착용자의 접근을 사전에 인지하고 유사시 효과적으로 자신의 위험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구체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전자발찌착용자의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 하고 나아가 예측과 통제가 가능한 범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유지에

---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던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전자 위치 확인 장치(이하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관한 법률안(2005. 5. 13. 발의)'의 통과를 다시금 강력히 제기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 없이 노력한 끝에 2007년 4월 이 법안의 법제화에 성공했고...(이하 생략)」라고 소개하고 있다.

기여할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여 정부 소관 부처가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시도해야만할 때 그 중 하나의 연구과제로 채택할 기회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 2. 연구의 필요성

특정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통해 국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시행<sup>4)</sup>된 전자발찌제도가 시행 초기 3년간의 놀라운 효과와 그로 인한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2011년 이후로 전년 대비 매년 큰 폭으로 재범률이 상승하여 각종 매스미디어에서 문제의 현상이 보도되고 각계 연구를 통해 문제점과 해법이 제시되면서 정부 당국에서도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범률 상승이라는 부정적 현상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국민의 안전에 여전히 위해 요소로 상존하고 있다.

재범률 상승의 요인은 복합적이겠으나 그동안 여러 차례 법률 개정을 거치면서 전자감독 대상 범죄가 강력범죄 위주로 확장되고 그에 연동하여 전자발찌착용자의 수가 급증한 것도 하나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이러한 수요 증가에 비해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의 인력은 적절히 충원되지 못하여 업무량 증가로 지도·감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업무담당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상황에 이르자 인력 증원의 현실화 요구와 더불어 인적 지도·감독 외에 다른 측면의 감독

---

4) 제정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는 “이 법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性行)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는 “이 법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의 입법 취지 및 그에 근거한 전자발찌제도의 도입 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2014년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와 ‘범죄징후 사전알림 시스템’의 개발을 선언하여 201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개선된 장비 하나로 전자발찌착용자의 재범 방지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시행 이전인 현재로서는 선불리 단정할 수 없다.

범죄예방은 하나의 방법이 만능일 수는 없다. 그것이 도구일 경우는 더욱이 그러하다. 다양한 제도와 장비를 통해 인적, 물적으로 범죄자의 범행의지를 억제하고 범죄자의 의지를 억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는 국가가 사전에 시민의 안전을 충실히 보호해야하는데 국가 또한 사전에 모든 범죄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직시한다면 보충적으로 국가 독점의 범죄자 관련 정보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시민과 공유하여 유사시 시민이 자신의 위험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시민의 자기 주도적 범죄통제 방안과 같은 사용자중심 개념의 범죄예방 모델의 개발을 통해 우리 사회가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전자발찌착용자의 예측과 통제가 가능한 제한된 범위의 범죄로부터라도 시민의 안전을 완벽히 보호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념의 틀을 벗어나 범죄예방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지금까지 범죄자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잠재적 범죄피해자인 시민(사용자)과 특정 범죄자의 위치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중심의 범죄예방 수단을 보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특정 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함은 물론, 부족한 보호관찰관의 업무량 경감과 효율적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전자발찌 본연의 기능과 더불어 범죄자가 재범을 결의하는데 심리적 가중 장애 요소로 작용하여 특정 범죄자의 재범 억제에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소개

이 논문은 서론에서 언급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외에 본론에서는 전자감독제도의 도입 배경과 근거 법률의 제·개정 주요 내용 및 현행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도의 의의와 목적에 비추어 전자발찌착용자의 재범률 평가를 중심으로 제도 시행의 성과와 문제점 및 한계를 분석하여 그것에 기인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물론 전자감독제도의 성과를 분석하는 지표가 재범률 하나만으로 될 수는 없겠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계량화하기 위한 제일의 척도 역시 재범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이 연구에서 전자감독제도 시행의 성과와 문제점 및 한계 등은 모두 재범률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재범률 감소의 원인이 전자발찌라는 물리적 장해 장치 하나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역시 인정하지만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전자발찌착용자의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재범률 감소를 위해 불철주야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보호관찰관들의 노력에 의한 성과는 이 연구의 범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논문 본론의 중심에는 이 연구의 핵심과제인 「사용자중심설계 기반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활용한 범죄예방 모델 설계」에 관한 구체적인 소개와 이의 활용에 대한 예상 쟁점 및 관련 근거 제도인 기존 전자발찌제도의 도입 당시 논거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발찌 위치정보의 실시간 일반 공개로 인한 전자발찌착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에 반하는 헌법상 제 권리의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도 많은 고민을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범죄예방 모델 설계 과정에는 전자발찌착용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자발찌 위치정보의 선택적 노출에 관한 솔루션과 전자발찌 위치 정보 공개 대상자의 엄격한 선정에 관한 기준도 제시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였다.

이 논문은 크게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고, 제2장에서는 전자감독제도의 도입 배경과 현행 전자감독제도 시행의 성과와 문제점 및 한계, 그리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전자발찌 관련 국내 선행연구 사례와 외국 운용 사례를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사용자중심설계 기반 범죄예방 개념 창안과 도입」의 의의, 제5장에서는 「사용자중심설계 기반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활용한 범죄예방 모델 연구」에 대해 아이디어와 모델 설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사용자중심설계 기반 전자발찌 위치 정보 활용에 대한 예상 쟁점 및 관련 제도의 도입 논거」를 소개하면서 전자발찌착용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발찌 위치정보 공개 대상자의 엄격한 선정 기준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7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주장을 요약하여 강조하는 결론으로 끝을 맺었다.



## 제2장 전자감독제도<sup>5)</sup>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제1절 전자감독제도의 도입 배경

2008년 9월 1일 시행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내에 처음 도입·시행된 전자감독 제도는 그로부터 약 10년 전인 1998년 5월에 이미 법무부가 개최한 전국 보호관찰 기관장 회의에서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문제를 정식 의제로 상정하여 논의를 하였고,

1999년에는 전자감독제도연구반을 구성하여 외국의 전자감독 입법례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시행현황을 견학함으로써 전자감독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때부터 학계에서도 전자감독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sup>6)</sup>

- 
- 5) 강호성, “전자감독제도의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형사정책 제26권 제3호(2014. 12.), 107.에는 전자감독제도의 개념에 대해, 『전자감독을 지칭하는 용어는 ‘전자감시’, ‘위치추적제도’, ‘전자발찌제도’ 등 다양하다. ‘전자감시’는 기계적 감시와 통제에 중점을 둔 부정적 뉘앙스의 개념이고 또한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보호관찰관의 인간적·사회적 활동을 포함할 수 없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위치추적제도’는 2008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위치추적제도’ 또는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라고 불리기도 하였으나 ‘가택구금 전자감독’ 등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감독을 개념적으로 모두 포섭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전자발찌제도’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한 부분이나 범죄인의 위치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형사제재수단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법무부 등 정부당국에서 대외적 이해를 위하여 공식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 개념이 제한적이어서 학술적 용어로 사용하기에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없지 않다(한영수 등, 2013:2-6). 따라서 전자감시·위치추적·전자발찌와 같은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이란 용어가 가장 적절하다. 왜냐하면, 전자감독은 전자적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인의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집행하는 것으로 단순히 기계적 설비의 적용뿐 아니라 전자발찌 착용 범죄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이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의 개입을 통해 심성을 변화시키는 사회내처우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한영수 등, 2013:8).』라고 설명하고 있다.
- 6)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0), 25-26; 정현미, “성폭력범죄대책과 전자감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21권 제1호(2009. 6.), 324; 김지선·장다혜·김정명·김성언·한영수·강호성·문희갑·권오성·김영록·최순영·박상욱,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

이후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약 20명의 여성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유영철 사건<sup>7)</sup>으로 인해 고위험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sup>8)</sup>

다음 해인 2005년 4월에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의원이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부녀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범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자칩이나 전자팔찌를 채워서라도 성폭력범죄를 근절시키겠다.”는 주장을 하여 이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도의 찬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등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결국 2005년 7월 당시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에 의해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근거 법률이 대표발의 되기에 이르렀고,

2006년 2월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 사건’<sup>9)</sup> 발생을 계기로 박세환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기초로 정부수정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시행일을 2008년 10월 28일로 하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27일 제정, 공포됨으로써 전

---

구(II)-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2014), 165.

7) 이 사건은 유영철이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서울 시내에서 모두 17회에 걸쳐 노인들과 부녀자, 정신박약 장애인 등 총 21명을 살해하여, 그 중 11구의 사체는 토막을 내어 암매장 하였고, 3구의 사체는 불에 태워 손괴, 은닉한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04년 12월에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후 2005년 6월에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확정되었다. 살인마 유영철의 범행은 우리 사법사상 범인 혼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고, 10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17회에 걸쳐 21명이 살해되었는데도 한 번도 해당 사건의 용의자로 추적 받은 사실이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저질러진 범행이며, 원한해소나 금품강취 등 직접적 살해의 동기가 없고 아무런 면식 관계도 없는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살해한 전형적 연쇄살인사건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연쇄살인마 유영철 사건 수사백서”(2005. 1.) 참조]

8) 김지선 등(2014), 위의 연구서, 166.

9) 이 사건은 2006. 2. 18. 서울 용산에 거주하던 당시 11세의 허 모 어린이가 집 앞 비디오 가게에 테이프를 반납하러 갔다가 실종된 후 실종신고 16시간 만에 경기도 포천시의 한 창고 옆 공터에서 온 몸이 불에 심하게 손상된 채로 살해되어 발견되었는데, 범인은 어린이의 주거지 인근 신발 가게 주인 김장호로 밝혀졌다. 범인은 비디오를 반납하러 가던 피해자에게 신발을 공짜로 주겠다고 접근하여 성폭행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자 피해 어린이를 목 졸라 살해하고 목 주변을 흙기로 찌르고 시신을 경기도 포천의 한 공터로 옮겨 불태웠다. 범인은 당시 사건 이전인 2005년 7월에 4세 어린이를 성추행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범인은 2006년 4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 된 후 그해 11월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인터넷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2015. 10. 14. 접속)

자감독제도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것이다.<sup>10)</sup>

## 제2절 제·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 1. 제정 법률의 주요 내용

제정 법률은 전자감독의 적용대상인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대해, ① 징역형 종료 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② 가석방·가종료·치료위탁시의 전자발찌 부착, ③ 형의 집행유예시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 세 가지 유형을 설정하여 전자감독을 도입하고, 각 유형별 전자감독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였다.<sup>11)</sup>

###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 1) 제1차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

2007년 12월과 2008년 2월에 발생한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인사건’<sup>12)</sup>과 ‘일산 초등학생 납치미수사건’<sup>13)</sup> 등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

10) 강호성, “전자감독제도의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형사정책 제26권 제3호(2014. 12.), 108.

11) 강호성(2014), 위의 연구서, 109.

12) 이 사건은 2007년 12월 25일 경기도 안양시에서 이해진(여, 당시 10세), 우예슬(여, 당시 8세) 양이 동시에 납치되어 살해된 사건이다. 범인의 이름을 따 ‘정성현 사건’으로도 불린다. 2008년 3월 11일 경기도 수원시 부근 칠보산 일대에서 이해진 양이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정성현이 범행을 자백한 이후인 2008년 3월 19일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에서 우예슬 양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범인 정성현은 1심·2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고, 2009년 2월 26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사형이 확정되었다.(인터넷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2015. 4. 10. 접속; 조종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5), 각주4 재인용)

13) 이 사건은 2008년 3월 26일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피해자(여, 10세)를 이명철(41세)이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려다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이웃사람이 달려오자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를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CCTV 화면을 입수한 방송국의 보도로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일산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인 검거를 강력히 지시하고 이후 동거녀의 신고로 이명철이 검거되었으며, 이명철은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최종적으

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자 국회는 2008년 6월 13일 전자감독 제정 법률의 시행일을 약 2개월 앞당겨 2008년 9월 1일로 조정하고,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sup>14)</sup>

전자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이 전자감독대상자에게 야간 외출제한, 특정지역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9조의2를 신설하였고 이러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 위반죄’를 신설하였다.<sup>15)</sup>

## 2) 제2차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

2009년 5월 8일 개정된 제2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미성년자 유괴범죄가 전자감독의 대상범죄로 추가되었고, 그에 따라 법률명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서 ‘특정 범죄자’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법 제4조를 개정하여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고 하여 집행은 만 19세가 된 이후에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sup>16)</sup>

## 3) 제3차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

제3차 개정은 만 8세 여아를 강간·상해한 ‘조두순 사건’<sup>17)</sup>과 여중생

---

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위의 인터넷 위키백과, 2015. 4. 20. 접속; 조종태, 위의 연구서, 각주7 재인용)

14) 강호성(2014), 앞의 연구서, 109.

15) 김지선 등(2014), 앞의 연구서, 167-168; 강호성, 위의 연구서, 109.

16) 강호성(2014), 위의 연구서, 109.

17) 이 사건은 2008년 12월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안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자아이를 강간 상해한 사건이다. 범인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고 형이 확정되었다.

을 납치하여 성폭행한 후 살해하여 그 시신을 정화조에 유기한 ‘김길태 사건’<sup>18)</sup>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특히 김길태는 성폭력 전과가 있던 자로서 범행 당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전자감독을 받지 않고 있던 점이 문제되어 ‘전자감독의 소급적용’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sup>19)</sup>

제3차 개정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전자감독의 대상범죄에 살인죄를 추가하였다.
- ②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상한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의 경우 하한을 2배로 가중하였다.
- ③ 전자감독대상자에게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였다.
- ④ 전자감독 준수사항에 주거지역 제한을 추가하고 해외출국이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신고사항에서 허가사항으로 변경하였다.<sup>20)</sup>

#### 4) 제4차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

제4차 개정은 ‘나주 초등학교 성폭행 사건’<sup>21)</sup>, ‘중곡동 임산부 성폭

---

사건 초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2009년 9월에 방송에 보도되면서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과립치함, 그리고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널리 알려졌다. 초기에는 ‘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졌으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명칭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 이후 조두순 사건으로 변경, 사용되었다.(위의 인터넷 위키백과, 2015. 4. 10. 접속; 조종태, 앞의 연구서, 각주8 재인용)

18) 이 사건은 2010년 2월 24일 김길태가 부산에서 집안에 있던 예비중학생을 납치하여 성폭행·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다. 2010년 2월 27일 경찰이 공개수사를 벌이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3월 7일 실종된 여중생이 집 부근의 가정집 물탱크 안에서 옷이 모두 벗겨져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김길태는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되었다.(위의 인터넷 위키백과, 2015. 5. 21. 접속; 조종태, 위의 연구서, 각주42 재인용)

19) 김지선 등(2014), 앞의 연구서, 168-169.

20) 강호성(2014), 앞의 연구서, 110.

21) 이 사건은 2012년 8월 30일 나주에서 고종석(23세)이 7세 초등학교를 성폭행한 사건이다. 범인 고종석은 새벽 1시 반경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이불 채 납치했다. 곧바로 영산강 밑의 영산대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후 사라졌고, 피해자의 부모는 오전 7시

행·살인 사건'<sup>22)</sup>, '인천 만삭 주부 성폭행 사건'<sup>23)</sup> 등이 계속 발생하자 국회 차원에서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가 신설되고 그에 따라 법률의 명칭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전자감독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에 강도범죄가 추가되고 아울러 성폭력범죄와 살인범죄의 미수범과 상습범에까지 전자감독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미성년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전자감독 청구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수사기관이 전자감독 수신자료 열람 시 법원의 영장이 아닌 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사후허가라도 가능하게 하였고, 보호관찰소의 장과 수사기관 간의 전자감독대상자에 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자감독의 대상을 강도범죄로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14년 6월 19일로 하여 대상자의 급증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sup>24)</sup>

---

반경 피해자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영산강 대로변에서 사건발생 11시간 만에 발견되었다. 이후 수사를 통해 성폭행 외에도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던 것도 드러났다. 범인 고종석은 성폭행, 살인미수,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앞의 인터넷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2015. 10. 14. 접속)

22) 이 사건은 2012년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당시 전자발찌부착 대상자였던 서진환이 30대 주부가 자녀를 유치원 버스에 태우기 위해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나온 사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귀가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하려다 반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법무연수원, "강력범죄의 현황과 대책", 범죄백서 2012 특집, 각주3 참조)

23) 이 사건은 2012년 8월 인천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만삭 임신부 성폭행 사건으로 당시 범인 최씨(31살)는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세 살배기 아들과 함께 낮잠을 자고 있던 20대 주부를 성폭행했다. 경찰은 피해자 남편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다음 날 범인을 붙잡아 구속했고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범인은 2005년 비슷한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SBS 뉴스 2012. 11. 19, <http://news.sbs.co.kr/news>, 참조)

24) 김지선 등(2014), 앞의 연구서, 169-170.

3.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 법률’로 칭함)」의 주요 내용<sup>25)</sup>

1) 전자장치 부착의 유형

현행 법률은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3장 ‘가석방 및 가중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를 유형화하고 있다.

①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은 특정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범한 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제도(법률 제5조<sup>26)</sup> 참조)이고,

---

25) 정철호·권영복,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2권 제4호(2013), 250-254. 참조

26) 제5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0.4.15, 2012.12.18]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0.4.15]
-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

②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에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 치료감호 집행 중에 가종료·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 또는 보호감호의 집행 중에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법률 제22조-제25조<sup>27)</sup> 참조)이며,

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5]

-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시행일 2014.6.19]]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0.4.15, 2012.12.18] [[시행일 2014.6.19]]
- ⑥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0.4.15, 2012.12.18] [[시행일 2014.6.19]]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5.8, 2010.4.15, 2012.12.18] [[시행일 2014.6.19]]

**27) 제22조 (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 ① 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8, 2012.12.18]
-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석방자의 인적사항 등 전자장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교도소장등은 가석방 예정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작명령’은 형집행유예시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법률 제28조-제30조<sup>28)</sup> 참조)이다.

**제23조 (가중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 ① 「치료감호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부작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 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중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중료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감호법」 또는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09.5.8, 2010.4.15] [[시행일 2010.7.16]]
- ②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피부착결정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보호감호시설의 장 또는 교도소의 장은 가중료자등이 가중료 또는 치료위탁되거나 가출소되기 5일 전까지 가중료자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시행일 2010.7.16]]

**제24조 (전자장치의 부착)**

- ①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 ② 전자장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석방 직전에 부착한다. [개정 2010.4.15] [[시행일 2010.7.16]]
  - 1. 가석방되는 날
  - 2. 가중료 또는 치료위탁되거나 가출소되는 날. 다만,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가중료자의 경우 집행할 잔여 형기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날 부착한다.
- ③ 전자장치 부착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집행이 정지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가석방 취소신청을 기각한 날 또는 법무부장관이 심사위원회의 허가신청을 불허한 날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제25조 (부착집행의 종료)**

-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개정 2010.4.15] [[시행일 2010.7.16]]
- 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거나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된 때
  - 2. 가중료자등의 부착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 3. 가석방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 4. 삭제 [2010.4.15] [[시행일 2010.7.16]]

**28) 제28조 (형의 집행유예와 부작명령)**

이 경우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과 ‘형의 집행유예시의 전자장치 부착’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가석방시의 전자장치 부착’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며, ‘가중료시의 전자장치 부착’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현행 법률은 부착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법률 제6조 제1항 참조29),

- 
- ①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기간 중 소재지 인근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지정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 등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과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그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부착명령의 집행)**

- ① 부착명령은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한다.
- ② 부착명령의 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된다. 이 경우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기각한 날 또는 법원이 검사의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한 날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제30조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28조의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개정 2010.4.15] [[시행일 2010.7.16]]

- 1.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 2.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
- 3. 집행유예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29) 제6조 (조사)**

- ①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착명령을 청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정신 감정이나 그 밖에 전문가의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률 제6조 제5항<sup>30)</sup> 참조).

## 2) 전자장치 부착 기간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 법원은 ①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의 경우 10년 이상 30년 이하, ②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의 경우 3년 이상 20년 이하, ③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2배로 한다(법률 제9조 제1항<sup>31)</sup> 참조).

수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

---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애에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30) 제6조 (조사)

- ⑤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정신 감정이나 그 밖에 전문가의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 31) 제9조 (부착명령의 판결 등)

- ①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개정 2008.6.13, 2010.4.15, 2012.12.18]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법률 제9조 제2항<sup>32)</sup> 참조).

### 3)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현행 법률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있다(법률 제9조 제3항<sup>33)</sup> 참조).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①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②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③ 주거지역의 제한, ④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⑤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⑥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률 제9조의2 제1항<sup>34)</sup> 참조).

---

#### 32) 제9조 (부착명령의 판결 등)

②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0.4.15]

#### 33) 제9조 (부착명령의 판결 등)

③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신설 2010.4.15]

#### 34) 제9조의2 (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시행일 2010.7.16]]

1.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또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주거이전, 7일 이상의 국내여행, 출국할 경우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법률 제14조<sup>35)</sup> 참조).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는 처벌을 받게 된다(법률 제38조, 제39조 제2항<sup>36)</sup> 각 참조).

#### 4)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보호관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하되, 피부착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법률 제12조 제1항<sup>37)</sup>, 제13조 제1항

---

#### 35) 제14조 (피부착자의 의무)

- ①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피부착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5] [[시행일 2010.7.16]]
- ③ 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4.15] [[시행일 2010.7.16]]

#### 36) 제38조 (벌칙)

피부착자가 제14조(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9조 (벌칙)

- ②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

#### 37) 제12조 (집행지휘)

및 제2항<sup>38)</sup> 각 참조).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부착명령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가석방 또는 가중료된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중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에는 집행이 정지된다(법률 제13조 제4항<sup>39)</sup>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부착명령기간의 경과,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의 사면, 부착명령 가해제 후 그 취소 없이 잔여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법률 제20조<sup>40)</sup> 참조).

#### 5)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정보보호

①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 38) 제13조 (부착명령의 집행)

①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중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한다. 다만,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중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개정 2008.6.13, 2009.5.8, 2012.12.18]

② 부착명령의 집행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39) 제13조 (부착명령의 집행)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8.6.13, 2010.4.15] [[시행일 2010.7.16]]

1.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2.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 40) 제20조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9조에 따라 선고된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

1.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3. 삭제 [2008.6.13] [[시행일 2008.9.1]]
4.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자가 그 가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부착명령기간을 경과한 때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며, 수신자료는 피부착자의 특정범죄의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도·원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부착명령 가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열람·조회 또는 공개할 수 없다(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 4)각 참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률 제16조 제4항<sup>42)</sup> 참조).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실효되거나 사면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때, 전자장치 부착이 종료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전자장치 부착을 받음이 없이 전자장치 부착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법률 제16조 제5항<sup>43)</sup>)

**41) 제16조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수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조회 또는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1. 피부착자의 특정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2. 보호관찰관이 지도·원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부착명령 가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2) 제16조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를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43) 제16조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였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참조).

#### 6)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재사회화

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원호를 하여야 하며,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부착자의 소재지 인근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 등 피부착자의 재범방지 및 수치심으로 인한 과도한 고통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법률 제15조<sup>44)</sup> 참조).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피부착자는 부착명령 집행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법률 제17조<sup>45)</sup> 참조),

---

지체 없이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를 폐기하고,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

#### 44) 제15조 (보호관찰관의 임무)

- ① 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원호를 한다.
- ② 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부착자의 소재지 인근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 등 피부착자의 재범방지 및 수치심으로 인한 과도한 고통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 ③ 보호관찰관은 필요한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교도소장등에게 요청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교육, 제64조의 교화프로그램 및 제107조의 징벌에 관한 자료 등 피부착자의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 중의 생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고 있는 피부착자를 면접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장등은 보호관찰관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 45) 제17조 (부착명령의 가해제 신청 등)

- ①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부착 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가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가해제의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피부착자의 인격, 생활태도, 부착명령 이행상황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부착명령을 집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법률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sup>46)</sup> 각 참조).

### 제3절 전자감독제도의 의의와 목적

#### 1. 전자감독제도의 의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안내 자료에는 전자감독제도의 의의에 대해,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상태를 파악·기록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제도”라고 소개하고 있고<sup>47)</sup>,

---

#### 46) 제18조 (부착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 ① 심사위원회는 가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피부착자의 인격, 생활태도, 부착명령 이행상황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 ② 심사위원회는 가해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피부착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직접 소환·심문 또는 조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회는 피부착자가 부착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부착자로 하여금 주거이전 상황 등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인터넷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정책자료 -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안내’ 참조(<http://www.cppb.go.kr>)

김지선 등의 연구<sup>48)</sup>에는, “전자감독제도란 전자발신장치 또는 전자감응장치를 이용하여 대상자가 특정 시간 동안 특정 장소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유제한적인 사회내 처우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외국에서는 대부분 저위험군 범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구금형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활용함으로써 교도소 과밀수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고위험범죄자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도입 초기부터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기종료자와 가석방 및 가종료자를 대상으로 사회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정철호 등의 연구<sup>49)</sup>에는,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사회내 처우를 확대해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요구, 교정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절감이라는 현실적 필요성,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강경하고도 적절한 사회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인의 처우·감독체계에 현대과학을 응용하자는 의견 등이 대두되면서 전자감시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전자감시제도는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된 범죄자나 형기 종료후 출소자의 신체부위에 전자감응장치를 부착하여 원격 감시하는 새로운 제재유형이라 할 수 있다(김혜정, 2000:29).”라고 소개하고 있다.

## 2. 전자감독제도의 목적

제정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는 “이 법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

---

48) 김지선 등(2014), 앞의 연구서, 66-67.

49) 정철호·권영복(2013), 앞의 연구서, 247.

행(性行)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는 “이 법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의 입법 취지와 그에 근거한 전자감독제도의 도입 취지를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

### 3. 현행 전자감독제도의 운용 현황

전자감독제도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 이동통신망 - 위치추적 관제센터 - 보호관찰소의 과정으로 특정범죄자의 위치가 위성 등을 통해 법무부의 위치추적 관제센터로 송신되면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특정범죄자의 이동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각종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1차적으로 대응을 하고,

특정범죄자의 위치정보는 보호관찰관에게 송신되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기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써,

① 피부착자가 휴대하는 것으로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및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동일성)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

② 휴대용 추적장치를 보조하는 장치로서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재택여부)를 확인하는 장치인 ‘재택감도장치’,

③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여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도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는 장치인 ‘부착장치(전자발찌)’로 구성된다(「전자장치부착법시행령」 제2조).<sup>50)</sup>(아래, 그림 151)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작동원리 참조)

〈그림1〉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작동원리



50) 정철호·권영복(2013), 위의 연구서, 249.

51)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인터넷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정책자료 - ‘위치추적 전자감도제도 안내’ 참조(<http://www.cppb.go.kr>)

## 제4절 전자감독제도 시행 경과

### 1. 전자감독제도 시행의 성과

당시 특정 성폭력범죄 환경에 대응하고자 지나긴 사회적 진통 끝에 특단의 대책으로 도입된 전자발찌는 전자감독제도 시행 초기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표1>에서 보는 것처럼 1% 미만의 재범률을 보일만큼 실제로 전자발찌착용자의 범죄 억제에 큰 기여를 하였다.

<표1> 전체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률<sup>52)</sup>

구 분	계	2008	2009	2010
전체실시사건	10,371	206	591	714
전체재범자 (재범률, %)	231 (2.23)	1 (0.49)	3 (0.51)	5 (0.70)

출처 : 법무부 보호관찰과 내부자료

또한 전자감독제도 시행 이전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에 대한 대검찰청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동종재범률은 14.1%인데 비해 전자감독제도 시행 이후 성범죄자들의 동종재범률은 1.67%로 종전 대비 1/9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한다.<sup>53)</sup>

물론 전자발찌착용자의 재범률 감소 원인이 전자발찌 외에 다른 여러 요소가 복합적인 작용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하여 강호성<sup>54)</sup>, “전자감독제도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보호관

52) 강호성(2014), 앞의 연구서, 122.

53) 강호성(2014), 위의 연구서, 123.

54) 강호성(2014), 위의 연구서, 124.

찰관이 전자감독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였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종전 연구들이 주로 전자감독제도 운영의 부정적인 성과인 재범률만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재범억제를 위한 긍정적인 성과인 취업알선 등 보호관찰관의 노력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적극 동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이 재범률 감소를 위해 전자발찌를 활용한 범죄예방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어서 재범률 감소를 위한 다른 요소는 이 연구에서는 논외로 한다.

## 2. 현행 전자감독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 1) 현행 전자감독제도의 문제점

특정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통해 국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시행된 전자감독제도가 시행 초기 3년간의 놀라운 효과와 그로 인한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2011년 이후로는 <표2>에서 보는 것처럼 전년 대비 매년 큰 폭으로 재범률이 상승하고 있다.

**<표2> 전체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률<sup>55)</sup>**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10.
전체실시사건	10,371	206	591	714	1,561	1,747	2,555	2,997
전체재범자 (재범률, %)	231 (2.23)	1 (0.49)	3 (0.51)	5 (0.70)	20 (1.28)	34 (1.95)	64 (2.50)	104 (3.47)

출처 : 법무부 보호관찰과 내부자료

55) 강호성(2014), 앞의 연구서, 122.

그리하여 각종 매스미디어에서 문제의 현상이 보도<sup>56)</sup>되고, 각계 연구를 통해 문제점과 해법이 제시되면서 정부 당국에서도 지속적인 노력<sup>57)</sup>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범률 상승이라는 부정적 현상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국민의 안전에 여전히 위해 요소로 상존하면서 최근에는 제도의 무용론<sup>58)</sup>까지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56)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으로는,

『[기자 24시] 있으나 마나한 전자발찌 제도, 매일경제 2010. 12. 01.자 기사; 성폭행 전자발찌, 턱없는 감시의 눈, 한국일보 2012. 05. 02.자 기사; <세상만사-나라 안>전자발찌 차고 또 성폭행 시도, 문화일보 2012. 08. 17. 기사; 전자발찌 피살 유족 “나라가 원망스럽다”, 경향신문 2012. 08. 22.자 기사; 전자발찌도 막지 못한 성범죄 전과자의 주부 살해, 경향신문 2012. 08. 22.자 기사; 전자발찌 대상자 9명 잠적…관리 허점 또 드러나, 서울신문 2012. 08. 25.자 기사; 목욕탕 열쇠만도 못한(?) 전자발찌…, 헤럴드경제 2012. 08. 28.자 기사; [옴부즈맨 칼럼] 한국형 전자발찌 모델이 필요하다, 서울신문 2012. 08. 29.자 기사; 서진환 ‘중곡동 살해’ 13일전에도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동아일보 2012. 09. 11.자 기사; 전자발찌 경로 조회 능력… 살인 막을 기회 놓쳤다, 한국일보 2012. 09. 12.자 기사; 전자발찌 위치정보 요청 4년간 46건뿐, 매일경제 2012. 09. 12.자 기사; 전자발찌 2100명 중 행적조사는 13건뿐, 동아일보 2012. 09. 13.자 기사; 감사원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감독 엉망”, 파이낸셜뉴스 2013. 01. 22.자 기사; 전자발찌 채우면 뭐하나… 관리·감독 ‘엉망’, 서울신문 2013. 01. 23.자 기사; 사설>전자발찌 관리 不實이 性범죄 더 키웠다, 문화일보 2013. 01. 23.자 기사; 전자발찌 차고 아랫집 여대생 성폭행, 한국일보 2013. 02. 12.자 기사; 전자발찌 살인전과자 아래층 여성 성폭행, 서울신문 2013. 02. 13.자 기사; 전자발찌 채워만 놓고 관리·정보공유 소홀, 한국일보 2013. 05. 06.자 기사; [이슈&현장] 전자발찌 찬 채 또 뭍쓸 짓… 국민은 아직도 불안하다, 세계일보 2013. 08. 19.자 기사;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살해 1년… 변한 게 없다, 서울신문 2013. 08. 20.자 기사; 전자발찌 재범 급증… 9월까지 85건 발생; 허술한 전자발찌 관리… 국민들은 불안하다, 세계일보 2014. 08. 24.자 기사; 전자발찌’ 20대, 여성 납치·성폭행하고 도주, 세계일보 2014. 08. 24.자 기사; 전자발찌 차고도 버젓이 ‘뭍쓸 짓’ 2014년 8월까지 78건… 4년 새 15배로, 동아일보 2014. 10. 06.자 기사; 전자발찌 비웃는 성범죄자, 헤럴드경제 2014. 10. 13.자 기사; ‘전자발찌범’ 재범 잇따라… 철저한 관리 뒤따라야, 세계일보 2015. 01. 29.자 기사; 전과6범 70대 전자발찌 찬 채 또 성폭행 시도, 헤럴드경제 2015. 03. 17.자 기사; 성범죄자, 전자발찌 훼손 잇따라, 경향신문 2015. 04. 23.자 기사; 발찌 찬 채 성범행 빈발… 법원은 부착명령만 반복, 문화일보 2015. 05. 01.자 기사; 강력범죄전과자 전자발찌 끊고 도심 활보, 세계일보 2015. 05. 07.자 기사; [사설] 제 기능 못하는 전자발찌 개선책 시급하다, 국민일보 2015. 05. 16.자 기사; 감시는커녕… ‘추행발찌’ 된 전자발찌, 국민일보 2015. 05. 16.자 기사; 하루 8000번 뺨~뺨… 관제원 1명이 250명 감시, 세계일보 2015. 11. 24.자 기사; 성범죄 전과 30대, 전자발찌 차고도 여중생 추행하다 ‘달미’, 세계일보 2015. 12. 21.자 기사』 등이 있다.

57) 손외철, “한국 전자감독제도의 재범방지 성과와 실효성 강화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0권 제2호(2014), 177-180.에는 ‘재범률 감소에 기여한 정책변화 분석’에 관하여, 1)경찰과 협업 강화, 2)신속대응팀 운영, 3) 부착대상자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대표적으로 들고 있다.

58) KBS NEWS [뉴스해설] 제 기능 못하는 전자발찌(2015. 9. 21. <http://news.kbs.co.kr/common>) 제하 보도내용에 의하면,

「전자발찌제도는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위치가 추적되는 만큼 범행을 다시 저

## 2) 현행 전자감독제도의 한계

전자발찌착용자의 재범률 상승 요인은 복합적이겠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법률 개정을 거치면서 전자감독 대상 범죄가 강력범죄 위주로 확장되고 그에 따라 전자발찌착용자의 수가 증가한 것도 하나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된다. 즉 2008년 시행 초기에는 성폭력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전자발찌제도는 2009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2010년 살인범죄, 2014년 강도범죄로 확장되어 감독 대상자의 수는 급증하게 되었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8년 151명, 2009년 127명, 2010년 393명, 2011년 932명, 2012년 1,032명, 2013년 1,771명, 2014년 2,129명, 그리고 올해 2015년 9월 현재 2,218명으로 급증한 상태이다. 이에 비해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일선의 보호관찰 인력의 충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량 증가로 지도·감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업무담당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실무에 관한 연구에서도 보이고 있다.

손외철의 연구<sup>59)</sup>에 보호관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설문조사에서 재범억제에 가장 중요한 점으로 인력증원이 67.6%를 차지하고 있다. 인적 지도·감독 역할의 중요성 강조와 함께 인력충원에 대한 현실적

---

지르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갈수록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훼손이 쉽고 또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략...) 전자발찌를 채우는 이유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조사로도 전자발찌착용자 가운데 28%는 성범죄를 다시 저질러도 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자발찌에 대해 더 강화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라고 해설하였다.

그 외에도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으로는, 『성폭행 방지 전자발찌 ‘무용지물’, 경향신문 2014. 08. 10.자 기사; 무용지물된 전자발찌, 한국일보 2014. 08. 13.자 기사; 성범죄 전자발찌 무용론, 헤럴드경제 2012. 09. 20.자 기사; [전자발찌 ‘무용지물론’... 개선책 없다] “전자발찌 착용자 주민들도 알아야”, 서울신문 2012. 08. 24.자 기사』 등이 있다.

59) 손외철, “한국 전자감독제도의 재범방지 성과와 실효성 강화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0권 제2호(2014. 8.), 181.



요구가 강하게 내포된 듯하다. 하지만 매년 급증하는 전자발찌부착 대상자의 규모에 비례하여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예산확보의 문제와 결부되므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범죄억제 방법으로 인적인 교화가 중요한 것은 논란의 여지없이 당연하지만 인적인 지도·감독이 범죄억제 효과에 한계가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범죄와 훼손 후 범죄의 경우도 현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한계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발찌는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이동경로 및 현재 위치는 알 수 있지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2012년 8월 서울 중곡동 부녀자 강간살인 사건(일명 서진환 사건)<sup>60)</sup>처럼 외출제한명령이나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지 않고 범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sup>61)</sup>

그러므로 결국 전자발찌착용자의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충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그 방법으로 현재 고비용을 투입하여 시행 중인 전자발찌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발상은 지속적인 연구 주제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 3. 전자감독제도 개선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전자발찌착용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자체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큰 불안요소가거니와 그들의 범죄가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여 매년 재범률이 상승한다면 이

---

60) 이 사건은 2012년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당시 전자발찌부착 대상자였던 서진환이 30대 주부가 자녀를 유치원 버스에 태우기 위해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나온 사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귀가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하려다 반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범무연수원, “강력범죄의 현황과 대책”, 범죄백서 2012 특집, 각주3 참조)

61) 강호성(2014), 앞의 연구서, 126.

것은 곧 국민의 피해와 직결되는 것이어서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 흉포한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한 고비용<sup>62)</sup>의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져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 받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국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전자발찌제도의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은 필수적인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늘어나는 전자발찌착용자의 수에 맞춰 가능한 인력의 충원이 신속하게 대응되어야 하겠지만 인력의 수급은 곧 예산의 문제와도 직결된 것이어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인적인 교화 외에 다른 보충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데 현재 이에 대하여 지능형 전자발찌에 대한 개발과 범죄 징후 사전알림시스템의 개발이 착수된 상황이다. 그러나 지능형 전자발찌 및 범죄 징후 사전알림시스템 역시 범죄 대응능력에 있어 즉각적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유사시 현장 대응능력에 있어 선제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범죄자가 범행을 결의하고 대상을 물색하는 단계에서 잠재적 범죄피해자인 시민이 스스로 자신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범죄예방 모델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한 가지

---

62) 김대진·최천근·정송미, “이슈관심주기 모형을 적용한 정책변동 분석 -강력범죄자 전자발찌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2호(2015. 6.), 203.의 ‘비용산출분석과 사업확장의 효과’에 관한 내용을 보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아감에 따라 효과성 문제와 함께 사업의 고비용구조 등이 지적되기에 이르렀는데, 고비용 구조의 사업이라는 단점은 전자감시센터 설치 등 초기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의 특성에서 주로 기인한 것이지만 전반적인 정부예산감축의 기조 속에서 이러한 단점은 전자감시제도의 유지 및 확장에 부정적인 요소로 인식되었다.」라고 설명한 후, 각주12)에서는 「위치추적전자장치구입비는 발부착장치, 휴대용 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의 비용을 포함하는데, 이 장치 3개(1세트)의 가격은 대략 150-200만원이며 월 2만원 가량의 통신비가 든다. 선진국 등에서는 대상자의 형편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 역시 적지 않다. 법무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 기준 4,142세트를 구매하였으며, 2013년까지의 누적 구입비는 61억 1천오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방안으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용자중심의 범죄예방 모델에 관한 연구는 실정법적 한계<sup>63)</sup>를 지닌 현 상황에서라도 개념적으로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 제3장 전자발찌 관련 국내 선행연구 및 외국 운용 사례 소개

### 제1절. 국내 선행연구

#### 1. 국내 동종 선행연구

국내 동종 선행연구로는 ‘정기혁, 스마트 단말을 이용한 성범죄자 위치 추적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가 있다. 전자발찌제도 시행 이후 국내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가운데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일반에 제공하여 범죄를 예방하자는 제안은 이 논문이 처음인 것 같고 현재까지 그 외의 동종 연구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정기혁의 논문은 성범죄자의 경우로 범죄예방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현재까지 확장된 많은 나머지 전자발찌착용 대상 강력범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현행 법률의 취지를 실현하기에는 외연이 제한적이다.

위 논문은 ‘범죄자와 이용자의 거리에 따른 서비스(주의, 경고,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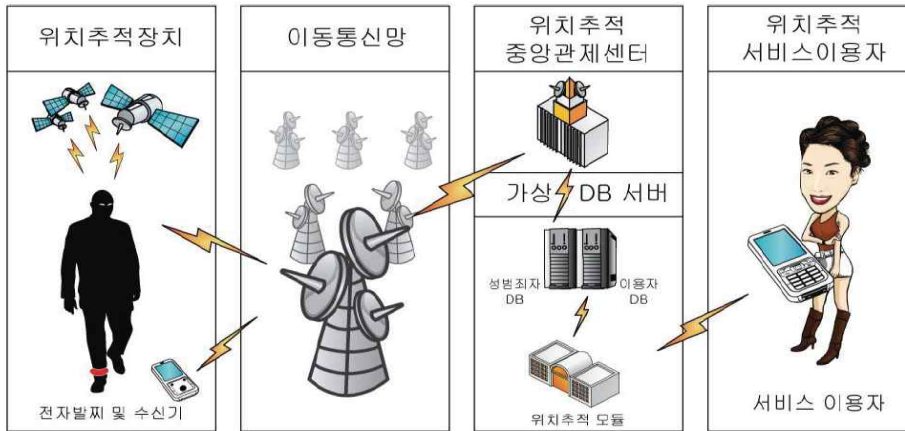
---

63)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전자발찌착용자의 위치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규정은 없다.

를 제공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위치 추적 서비스를 제안' 하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다.<sup>64)</sup> 위 연구가 제안한 개념도는 아래 <그림 2> 와 같다.

제안한 모델은 최종 위치추적 정보의 획득자가 개인 서비스 이용자가 되며, 미리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해당 위험지역을 벗어나게 되어 성범죄 예방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다.<sup>65)</sup> 위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위치관계 서버 부분과 앱 서버, 해당 앱 서버로부터 송신된 정보를 표현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다.<sup>66)</sup>

<그림 2> 정기혁의 논문에서 제안한 개념도<sup>67)</sup>



구체적인 실제 구현 방법은 <그림 3> 에서 소개하는 것과 같이 범죄자가 일정 거리에 도달하면 특정 범위에 있는 색상이 자동으로 바뀌어 신호를 알려주며 마지막 RED존에 도착하게 되면 구역별 색상이 깜빡이며 변하게 된다고 한다.

64) 정기혁, “스마트 단말을 이용한 성범죄자 위치 추적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2), 2.  
 65) 정기혁(2012), 위의 논문, 24.  
 66) 정기혁(2012), 위의 논문, 25.  
 67) 정기혁(2012), 위의 논문, 24.

그리고 1단계는 주의 단계, 2단계는 경고 단계, 3단계는 위험 단계로 구별하고, 주의 단계는 거리 200m 주의 알림, 경고 단계는 거리 50-100m 경고 알림, 위험 단계는 0-30m 위험 경고 알림과 신상정보, 사진, 범죄내용이 공개된다는 것이다.<sup>68)</sup>

〈그림 3〉 정기혁의 논문에서 제안한 실행 화면<sup>69)</sup>



이상에서 살펴본 정기혁의 연구는 성범죄자의 위치정보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앱서버에서 가공하여 이를 근접도 표시 화면을 통해 거리만 개인의 스마트폰에 제공하는 방식이므로 본 논문에서 연구하는 ‘사용자중심설계 기반 전자발찌 위치정보 활용 범죄예방 모델’이 제안하는 지도 기반 어플리케이션 방식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거리만 표시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표시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안한 솔루션은 지도 위에 전자발찌착용자의 위치와 사용자 위치를 동시에 표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자에게 더 많은 추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전의

68) 정기혁(2012), 위의 논문, 28.

69) 정기혁(2012), 위의 논문, 36.

연구에서 제안된 방식 보다 한층 더 사용자에게 유리한 모델을 설계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연구에서 제안된 방식에서는 표시할 수 없었던 전자발찌착용자의 위치정보에 대한 포지션을 지도상에 표시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회피 방향과 안전 경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주변의 환경 정보를 필터링하여 결정된 보안수준에 따라 위험경고의 수준도 변경 가능하도록 했으며, 나아가 요청기반 서비스 방식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정보에 따라 전자발찌착용자의 위치정보가 선택적으로 노출되게 함으로써 자칫 무분별하게 위치정보가 공개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전자발찌착용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함께 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솔루션은 해당 본장에서 다시 자세히 공개하기로 한다.

## 2. 국내 이중 선행 연구

국내 전자발찌 관련 범죄예방 연구 가운데 위치정보 이용을 제외한 나머지 방안에 대한 연구로는 주로 전자발찌를 현재 보다 좀 더 지능화하는 형태의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 제도 속에서 이미 사용 중인 전자발찌를 고기능화하는 방법이 실정법적 한계나 헌법적 가치 훼손의 시비를 줄이면서 시행 가능한 단기 프로젝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래 <자료 1>의 내용과 같이 실제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개선 작업도 지능형 전자발찌에 맞춰져있다.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

1)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

전자감독제도 시행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범하는 사건들이 각종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각 언론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제도를 시행하고도 재범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일기 시작하였다. 즉, 일반 국민들은 발찌를 채워놓으면 부착대상자들의 모든 행동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범을 방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발찌제도는 24시간 실시간으로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제도이지 부착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반드시 해결하고자 2014년 산업부와 함께 2015년 개발을 목표로 금년부터 외부정보(맥박, 음주여부, 비명소리, 격투음 등) 감지기능이 탑재된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36억원으로 2014년 현재 6.6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장치가 개발된다면 제한적이지만 급박한 외부환경을 미리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재범방지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외부정보의 파악은 상당부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법무부에서는 개발단계에서부터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고 적용단계에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권침해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Pre-Crime Alarm)

법무부에서는 2014년 미래부와 협업,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에서 수집된 정보와 대상자의 과거 범죄수법· 평소 이동패턴 등 빅데

70) 손외철(2014), 앞의 연구서, 183-184.

이터를 분석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알려주는 ‘범죄징후 사전알림 시스템’을 2016년 개발 완료로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3월 미래부의 ‘비타민 프로젝트’ 지원과제에 선정되어 금년 한해 시스템 개발비용으로 1.6억원 지원 받았으며, 2014년 법무부 예산으로 3.3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법무부가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행의 전자감독시스템의 근본적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전자감독제도 도입 이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현행 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가 외출금지 위반 등 제반 준수 사항 위반에 따른 ‘경보’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특성으로 인해 ‘서진환 사건’과 같이 위반경보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에도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의 과거 범죄수법상의 특성, 평소 활동시간 및 이동패턴 등 제반 데이터를 DB화하고 이러한 정보를 현재의 대상자 행태정보와 실시간으로 비교·분석하여 기존의 ‘위반경보’와는 별개로 시스템분석에 의한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관제센터와 보호관찰관에게 자동 통보하여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외부정보 감응형 정보’와 함께 대상자의 이상 징후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출동 등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착대상자의 재범을 차단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지금까지 지능형 전자발찌에 대한 연구로는, 이길용·박수현, “위치인식 불가의 극한상황에서 성범죄 예방 상황인지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 전자발찌 시스템”, 김광명·위대한·문승진,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스마트 전자발찌 시스템 제안”, 차민규·김동희·김태환·곽대경, “전자감독제도의 실태분석을 통한 지능형 전자발찌 도입 방안”, 곽대경·김



태환·차민규·홍준수, “지능형 전자팔찌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 제2절. 외국의 운용 사례

외국에서는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 또는 가석방된 범죄자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손목 또는 발목 등에 전자감응장치를 부착시켜 유선전화기 또는 무선장비를 이용하여 원격 감시하는 새로운 제재유형의 하나로 사용하고 전 세계적으로 약 1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sup>71)</sup>

도입 시범 실시한 순서는 미국이 1983년, 캐나다 1987년, 호주 1988년, 영국 1989년, 싱가포르 1991년, 이스라엘 1992년, 스웨덴 1994년, 뉴질랜드와 네델란드 1995년, 스위스 1996년, 독일이 2000년 등이다.<sup>72)</sup>

### 1. 미국

교도소 과밀수용과 구금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부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호관찰을 활용하면서 보호관찰에 부가되는 대표적인 것으로 전자감시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1983년 뉴멕시코주 지방법원 판사 Love가 사회내 처우를 판결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켜 준수사항의 이행을 감독하는 방식으로 구금형의 대체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sup>73)</sup>

미국에서는 전자감시제도를 시행한지 20년이 넘어, 어떤 나라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게 많은 자료와 임상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71)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 제12권 제2호(2000), 109.

72) 김혜정(2000), 위의 연구서, 각주3. 참조.

73) 김혜정(2000), 위의 연구서, 112-113.

뉴저지주에서는 전자감시 대상자를 ‘위험성이 적은 사람’으로 제한하는 반면, 플로리다주에서는 일반 보호관찰프로그램으로는 적합하게 보이지 않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도 전자감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초기에는 전자감시를 교도소 수감자를 가석방하면서 가택구금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나, 점차 자유형을 선고하여야 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하면서 전자감시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발전해 왔고, 오늘날에는 미국내의 거의 모든 주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sup>74)</sup>

## 2. 영국<sup>75)</sup>

1988년 영국정부는 전자감시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하고 시찰단을 미국에 파견하여 조사한 후, 1989년에 3개 지역에서 50명에게 미결구금에 대신하는 것으로 내무성에서 사기업을 통해 실시한 결과 대상자 중의 대다수가 지시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을 하는 등 전자감시는 실패로 돌아갔다. 전자감시의 첫 번째 시범결과 안전에 문제점을 나타냈고, 어떤 장점도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없었으며 오히려 가족 간에 긴장관계를 유발하였다.

그 후 두 번째 시범실시를 위한 전자감시 프로젝트는 1995년에 새롭게 시작되었으며, 그 사이에 이루어진 법 개정을 통해 예전보다 넓은 적용범위를 인정하게 되었다. 영국에서 전자감시 가능성에 대한 결정은 형사사법안(Criminal Justice Bill, 1990)에 규정되어 있다. 그 후 전자감시제도를 위한 법률 정비작업으로 전자감시를 통한 통금명령이 1991년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제12조 및 제13조에 근거하여 도입

---

74) 김혜정(2000), 위의 연구서, 113.

75) 조규범,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헌법적 소고”, 성균관법학 제19권 제3호(2007), 88-89.

되었고, 그 후 1994년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에 관한 법률(Criminal Justice & Public Order Act)에서 형사사법법 내용을 개정하였다.

이후 1997년 양형에 관한 법률(Criminal Sentence Act)을 제정하여 16세 이상의 대상자에게 구금을 대신하여 사회봉사명령 내지 전자감시 통금명령이 대상자의 동의가 없어도 법원에 의해 선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1998년 범죄와 비행에 관한 법률(Crime & Disorder Act)을 제정하여 전자감시 가택통금 전국실시를 규정하였다. 영국에서 전자감시 가택통금은 새로운 사회내 처우로써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영국에는 형사사법법과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6세 이상의 범죄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선고하는 새로운 사회내 처우로써 전자감시 통금명령이 있다. 이는 단독 또는 다른 사회내 처우와 함께 선고하는 것으로써, 하루 2시간 이상 12시간 이하의 통금시간 범위 내에서 최고 6개월까지 통금기간의 선고가 가능하다. 전자감시 통금명령의 전자감시 방법은 전자감시 가택통금과 동일하다. 영국의 재판부는 구금형의 대체수단으로 혹은 가장 무거운 사회내 처우로써 전자감시 통금명령을 선택하고 있다.

### 3. 독일<sup>76)</sup>

독일은 1997년부터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2000년 5월 처음으로 헤센(Hessen)주에서 전자감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헤센주의 시범모델은 네 가지 경우에 전자감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먼저 보호관찰부 가석방에 따른 지시, 보호관찰부 잔형의 중지에 따른 지시, 행장감독에 있어서 지시 그리고 미결구금 집행의 중

---

76) 조규범(2007), 위의 연구서, 90-91.

지에 대한 지시 등이다. 이것은 현재 특별한 법 개정 없이 독일형법 제 56조 이하 보호관찰지시, 제68조 이하 행장감독, 독일형사소송법의 제 116조 미결구금에 따라서 가능하다.

독일연방참의원에 의해 제안된 법률안에 따르면 전자감시 재택구금은 자유형이나 벌금형과 함께 독자적인 제재유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용과 개방처우에 대한 부가적인 선고유형으로 본다.<sup>77)</sup>

독일의 각 주 법원은 형의 집행유예나 가석방의 결정에 있어서 지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음주관련 범죄나 음주운전의 경우 대상자의 전화기에 접속된 분석기를 통하여 호흡하도록 함으로써 알코올 흡입 여부를 원격지에서 전자감시하고 있으며, 집중보호관찰프로그램과 연계한 주거지나 제한장소에의 존재 여부를 전자장치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 제4장 사용자중심설계 기반 범죄예방 개념 창안 과 도입

### 제1절 사용자중심설계의 의미

사용자중심설계는 특정 영역의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일반 용어이다. 즉 사용자와 중심, 그리고 설계를 조합한 합성어이다. 각 단어의 기본 의미는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으므로 여기에서 따로 기술하지는 않는다.

이 논문에서 사용자중심설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첫째로 그동

---

77) Edwin Kube, "Elektronisch überwachter Hausarrest - "Virtuelle Gitter" als hilfreiche neue Unterbringungsform?", Dud. 11/2000, 634면 참조; 조규범(2007), 위의 연구서, 91 재 인용.

안의 범죄예방이 국가 주도의 일방적 방식인데 대해 본 논문에서 연구하는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활용한 범죄예방 모델’은 국가가 사용자(시민)와 전자발찌착용자의 위치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범죄예방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가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신작용과 행동을 통해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위험을 회피한다는 측면에서 범죄예방 행위 주체로서의 의미로 사용자 개념을 사용하였고, 두 번째는 이 논문의 연구 모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또한 기존의 국가 주도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브로드캐스트(Broadcast)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시민)의 프로파일에 따라 전자발찌착용자의 위치정보가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요청기반(Request-Base) 방식을 적용하므로 정보 주체로서의 의미로 사용자중심(User-Centered)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세 번째로 이 연구 모델에서는 사용자 주변의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Raw 정보(인파수, CCTV, 편의점, 안전한 길 등)들을 필터링하여 각 환경의 보안등급을 책정하고 그것으로 사용자가 속한 외부 환경의 위험경고수준을 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전자발찌착용자의 위치정보를 선택적으로 노출하게 함으로써 모델 설계 전 과정에 사용자 정보와 사용자 환경정보, 그리고 이 두 정보의 결합정보가 핵심 기반이 되므로 이에 사용자중심설계(User-centered Design)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 제2절 사용자중심설계 기반 범죄예방 개념 창안·도입

사용자중심설계 기반 범죄예방 개념의 도입은 기존의 범죄예방 설계 기법만으로는 전자발찌착용자의 재범률 상승이라는 우리사회에 상존하는 문제의 부정적 현상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의 시도로 창안·도입하게 되었다.

사용자중심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범죄예방 개념은 지금까지의 국내 논문이나 연구보고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검색의 결과가 완벽한 것은 아니어서 존재의 가능성은 열어두나 최근까지 NAVER와 Google, 그리고 다수의 국내 논문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범죄예방 이론이나 범죄예방 설계 기법과 관련하여 사용자중심설계 개념을 접목시키거나 동일 용어를 사용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외국에서 그러한 개념을 사용한 연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검색기능의 한계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최근까지의 Google 검색에서는 국외에서도 범죄예방 이론이나 범죄예방 설계 기법과 관련하여 사용자중심설계 개념을 사용한 연구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이 연구가 추구하는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활용한 범죄예방 모델 설계’에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 설계 기법의 고정적 틀을 벗어나 범죄예방을 위한 새로운 설계기법으로 사용자중심설계라는 개념을 창안하여 이 연구에 도입하였다.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활용한 범죄예방 모델’ 설계에서 사용자중심설계 개념의 도입은 필요적 과정이었는데 그 이유는 범죄예방 모델 설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요소가 사용자 정보와 사용자가 속한 환경정보, 그리고 이 두 정보의 결합정보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범죄예방설계의 틀은 범죄자중심<sup>78)</sup>의 행위통제 설계 방식

---

78) 박정은·강석진·이경훈,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이용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12권 제2호(2012), 53.에 있는 내용을 보면,

「1970년대 이전의 범죄학 연구는 범죄 예방을 다루는 데 있어 가해자, 즉 사람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그 효과와 대처 방안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면서 이후 공간적·사회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상황적 접근(situational approach)’에 근거하는 연구 흐름이 대두되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범죄자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가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을 제어하여 범죄 피해를 방지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예방이론으로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과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으로 대표된다. 이러한 범죄예방이론은 범죄 기회를 감소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범죄기회론(Criminal Opportunity Theory)’과 그 맥락을 같이 하며, ‘범행 동기’가 아닌 범죄를 유발하고 억제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한 ‘기회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주된 형태였고 이것은 지금도 그 자체로서는 중요성에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범죄자중심의 통제만으로는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의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1970년대 미국을 시작으로 환경설계<sup>79)</sup>를 통한 범죄예방 방안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90년 이후 법무부에서 이 방안을 도입하여 여러 지자체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도시환경의 설계를 시도한 사례가 있다.

환경설계 또한 범죄예방을 위한 전통 틀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에서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범죄예방 효과에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 또한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여 이를 극복하고 보충하기 위한 제3의 시도로 잠재적 범죄피해자인 시민(사용자)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범죄예방 설계 개념인 사용자중심설계 기반 범죄예방 개념을 창안하게 되었고 이것을 이 연구에 도입하게 되었다.

---

79) 강은영,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와 성폭력”, 젠더리뷰(2012), 16.에 있는 내용을 보면,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미국과 영국 등 서구사회에서 가해자 엄벌이나 경찰활동을 통한 범죄예방의 한계에 봉착하자 지역사회의 공간구조와 관리방식의 변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안전(safety)을 확보하고자 대두된 범죄예방 전략이다. 간단히 말해 CPTED는 “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design)와 효과적인 사용(use)으로 범죄 발생률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기법”을 의미한다. CPTED의 이론적 뿌리는 상황적 범죄예방론에 두고 있다. 범죄는 범죄자와 피해자, 취약한 공간구조의 3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때 발생하므로 사회구성원이 거주 혹은 이용하는 물리적환경의 설계와 관리방식을 변화시켜 범죄 유발요인(범죄기회)을 감소시키면 범죄가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 행위를 유발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변형시켜 범죄의 기회적 요인을 제거하게 되면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범죄의 실행이 어렵게 되고 거주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생활하는 환경이 더욱 안전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CPTED는 범죄예방은 물론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으로서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 제3절 사용자중심설계 기반 범죄예방 개념 도입의 의의

사용자중심설계를 이 연구에 구체적으로 접목하여 설명하면 전자발찌의 태생은 범죄예방 설계의 측면에서 보면 분명 범죄자중심의 설계로 볼 수 있다.

범죄자에 대해 재범을 억제할 목적으로 법률이 정한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체에 장치를 부착하여 범죄자를 감독의 대상에 두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전자발찌제도는 형사정책상 특별예방<sup>80)</sup>의 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자중심설계는 최근 CCTV 증설, 안전한 길 등 다양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과 결합하여 일정 기간 긍정적 성과를 보이기는 했으나 시행 초기의 상당한 효과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이후로 매년 재범률 상승이라는 부정적 현상을 억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복합적이겠지만 주요 원인으로서는 발찌를 착용하고도 범행을 하거나 발찌를 훼손하고 범행을 하는 경우와 같이 처벌을 감수하고 범행으로 나아가는 경우와 전자발찌착용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착용자의 범행의 경우와 같이 국가가 선제적으로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 범죄예방 기능이 약화되어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흉포한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한 고비용의 제도가

---

80) 손동권, “한국 형사정책의 이슈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3호(2009), 24.에 있는 내용을 보면,

「범죄자에 대한 사후 처벌적 형사정책은 사전적 범죄예방의 기능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즉 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형사 처벌은 일반국민이 사전적으로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일반예방과 범죄자 자신의 재범을 예방하는 특별예방에도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 진압적 방법의 범죄예방책 보다는 사전적 범죄예방의 방법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에 의한 피해자도 발생하면서 그 피해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범죄자의 검거와 교정에 많은 비용이 들면서 실질적 교정효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며, 처벌받는 범죄자의 가족은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고, 범죄증가로 인한 일반국민의 불안감은 사회해체를 야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후 진압 위주 예방책의 부정적 작용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적 범죄예방 대책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국가 경제적으로 손해인 것은 당연하고 그 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다.

모두가 주지하듯이 범죄는 예방이 최선이다. 그 이유는 한번 발생한 범죄의 피해는 결코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정 범죄자가 범행을 결의하고 대상을 물색하는 단계에서 잠재적 범죄피해자인 시민(사용자)이 스스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범죄예방 모델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용자중심의 범죄예방 모델에 관한 연구’는 헌법적 가치 충돌의 문제와 실정법적 한계를 지닌 현 상황에서도 개념적으로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념의 틀을 벗어나 범죄예방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지금까지 범죄자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잠재적 범죄피해자인 시민(사용자)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중심의 범죄예방 수단을 보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특정 범죄자의 재범위험으로부터 시민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부족한 보호관찰관의 업무량 경감과 효율적 업무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전자발찌 본연의 기능과 더불어 특정 범죄자가 재범을 결의하는데 심리적 가중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특정 범죄자의 재범 억제에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사용자중심설계는 전통적인 범죄예방설계의 틀인 범죄자중심설계의 틀을 대체하는 방법은 아니고 기존의 범죄자중심설계의 틀과 그것의 한계를 보완할 목적으로 시도된 환경설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 기법들의 흠결을 보완하는 범죄예방설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중심설계는 이전의 두 설계 기법에 이은 제3의 범죄 예방설계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종합하면 이들의 구조는 상호보완의 관계이고 기능은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한다. 이것을 도해하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 범죄예방설계의 틀

<div style="text-align: center;">효과</div> <div style="text-align: center;">분류</div>	<div style="text-align: center;">④범죄예방효과의 흠결 부분(D)</div> <div style="text-align: center;"><math>D = G(\text{범죄예방효과의 총합}) - S</math></div>	
③ 사용자중심설계 USER-CENTERED DESIGN 새로운 개념의 미래형 보완적 틀	③의 범죄예방효과(Z)	①+②+③의 시너지 효과 $(X + Y + Z = S)$ $\times S > (X) + (Y) + (Z), S > S$
② 환경중심설계 CPTED 20c 후반 도입된 보완적 틀	②의 범죄예방효과(Y)	①+②의 시너지 효과 $(X + Y = s)$
① 범죄자중심설계 BASIC DESIGN 전통적 틀	①의 범죄예방효과(X)	$\times s > (X) + (Y)$

## 제5장 사용자중심설계 기반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활용한 범죄예방 모델 연구

### 제1절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디지털디바이스 를 이용한 전자발찌 위치정보 활용

이 연구는 전자발찌착용자의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 현상을 제거하여 전자발찌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특정<sup>81)</sup> 전자발찌착용자의 위치정보를 개인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디지털디바이스에 Application 형태로 제공하여 일반시민 누구나 쉽게 전자발찌착용자의 접근을 사전에 인지하고 유사시 효과적으로 자신의 위험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구체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제도상 전자발찌제도는 실시간 위치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발찌착용자의 소재와 행선지 파악, 발찌훼손여부 및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감독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사실상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처벌을 감수하고 범죄로 나아가는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통제하기에는 논리적·물리적 양면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의 모델은 지도 기반의 Application을 통해 개인들이 일상적으로 휴대하고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디지털디바이스에 사용자의 위치정보와

---

81) 전자발찌 위치정보 활용은 전자발찌착용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중 위치정보 활용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특정이라는 단서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선별 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본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전자발찌착용자의 위치정보를 동시에 공개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전자발찌착용자의 position과 그에 대한 사용자의 회피 direction과 safety path, 최단거리 안전지대, 그리고 거리에 따른 위험수준의 표시와 경고단계 구별 등 사용자(시민)가 스스로 선제적으로 위험을 회피할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제한된 범위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절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용자중심 범죄예방 모델 설계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범죄예방 모델은 지도기반의 Application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사용자(시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이다.

이는 사용자중심설계에 따른 요청기반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사용자 정보와 사용자 주변의 환경정보를 조합·필터링한 융합정보의 보안수준을 기준으로 전자발찌 위치정보가 사용자에게 선택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모델의 구체화는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단계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개념적인 구체화를 의미한다. 현재는 실정법적인 한계로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Application의 현실적 구현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향후 발전적 연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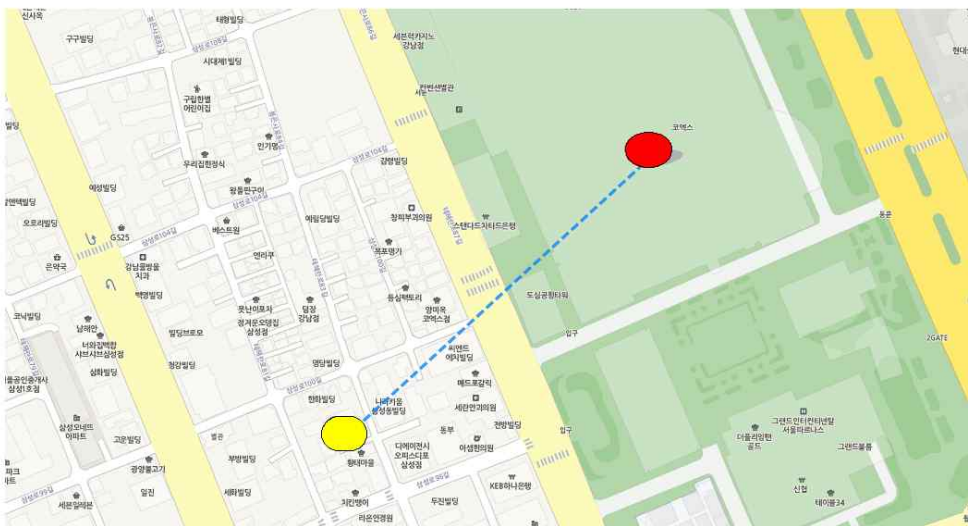
이 모델의 개념의 구체화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기본 설계로써 지도기반 전자발찌의 위치정보 공개이고, 두 번째는 확장 설계로써 위험회피를 위한 다양한 표시방식의 솔루션 적용이며, 세 번째는 요청기반 설계로써 전자발찌착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

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자발찌 위치정보의 선택적 노출에 관한 솔루션 적용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개념의 구체화를 각 해당 그림과 함께 순차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 1. 기본 설계(지도기반 전자발찌 위치정보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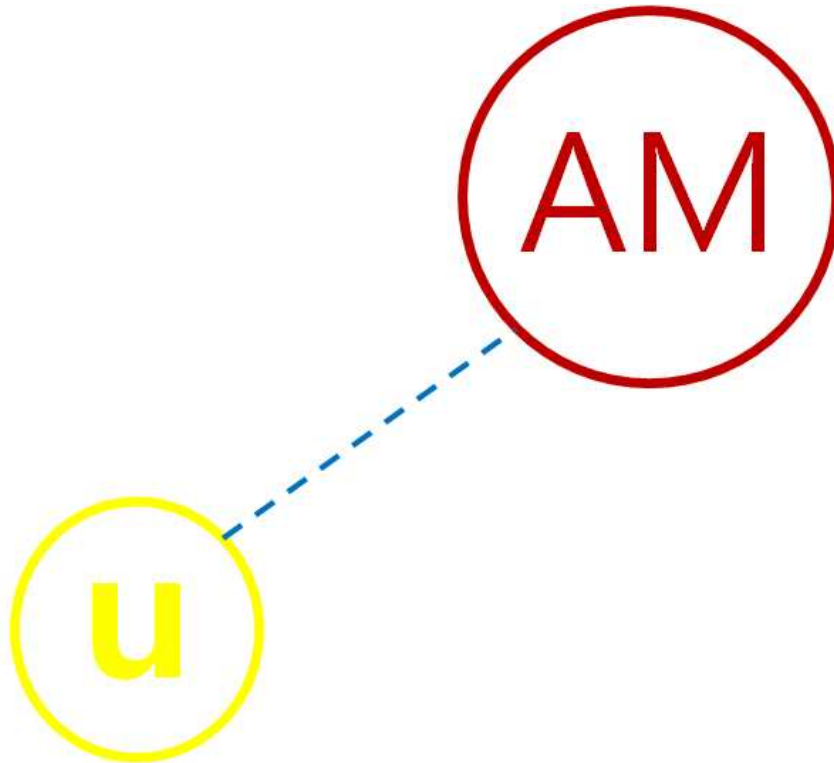
〈그림 4〉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모델은 전자발찌착용자의 위치정보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동시에 지도 위에 표시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한다.

## 2. 확장 설계(위험회피를 위한 다양한 표시방식 솔루션)

〈그림 5〉 AM의 position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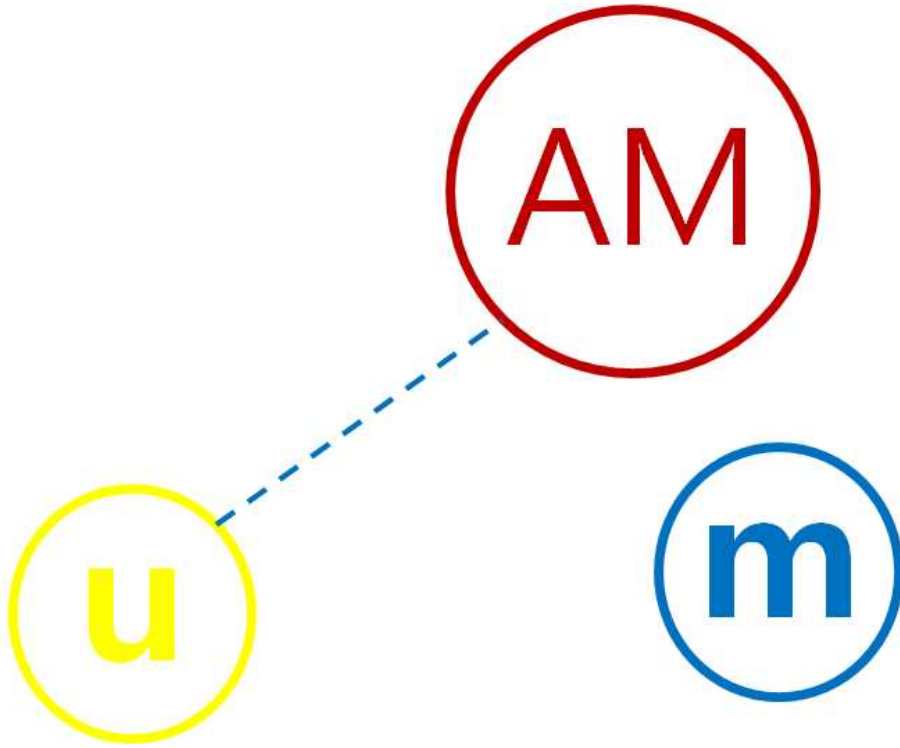


( AM : Ankle Monitor / U : User)

AM의 position 표시 이유는, position 표시를 하지 않고 거리만 표시할 경우 U가 자칫 AM으로 접근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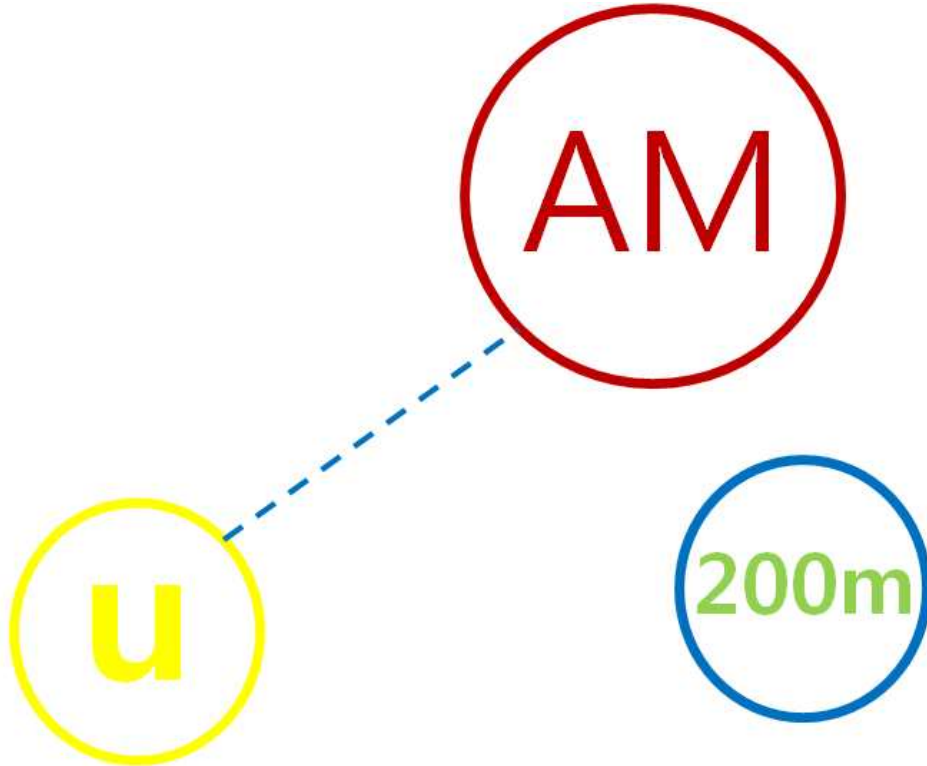
그림에서 AM과 U에 대해 특별히 다른 이미지를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부정적 판단이나 편견 등의 시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향후 지속적 연구를 통해 부정적 판단이 없는 직관적인 이미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림 6> 거리 표시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M과 U의 위치정보 사이를 청색의 점선으로 연결하고 그 사이에 청색의 원형 안에 거리를 수치로 표시함으로써, 사용자가 위험수준의 인식을 쉽고 직관적으로 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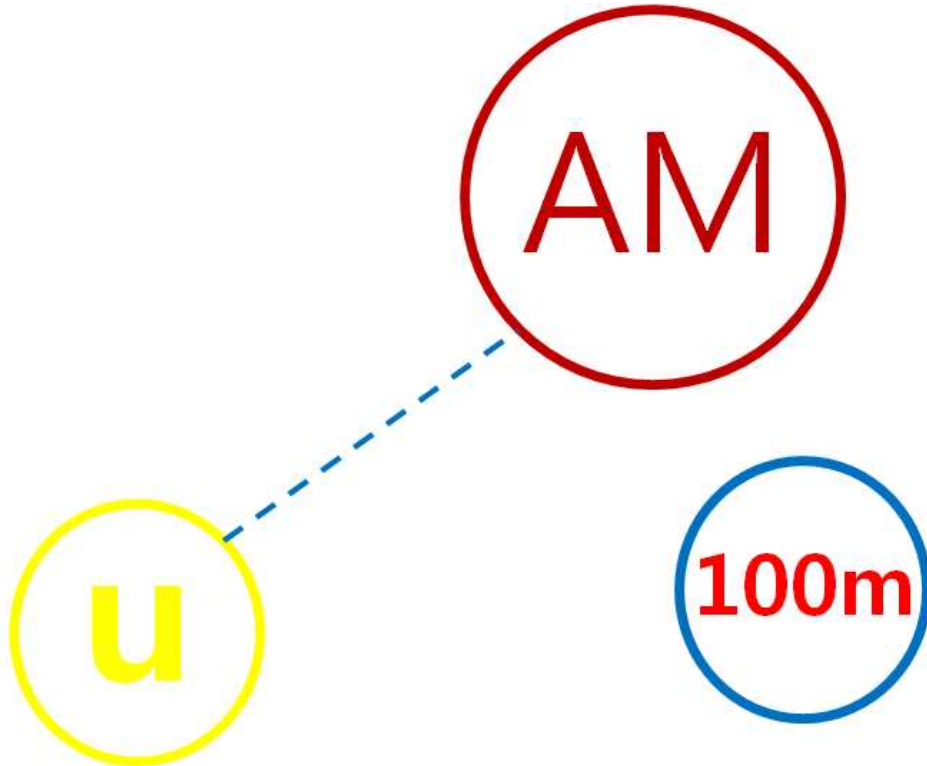
<그림 7> 거리에 따른 위험의 구별 표시(200m)



첫째, 200미터의 거리에서부터는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공개하지만,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용자가 자신이 이동할 방향으로 안전하게 선택해서 이동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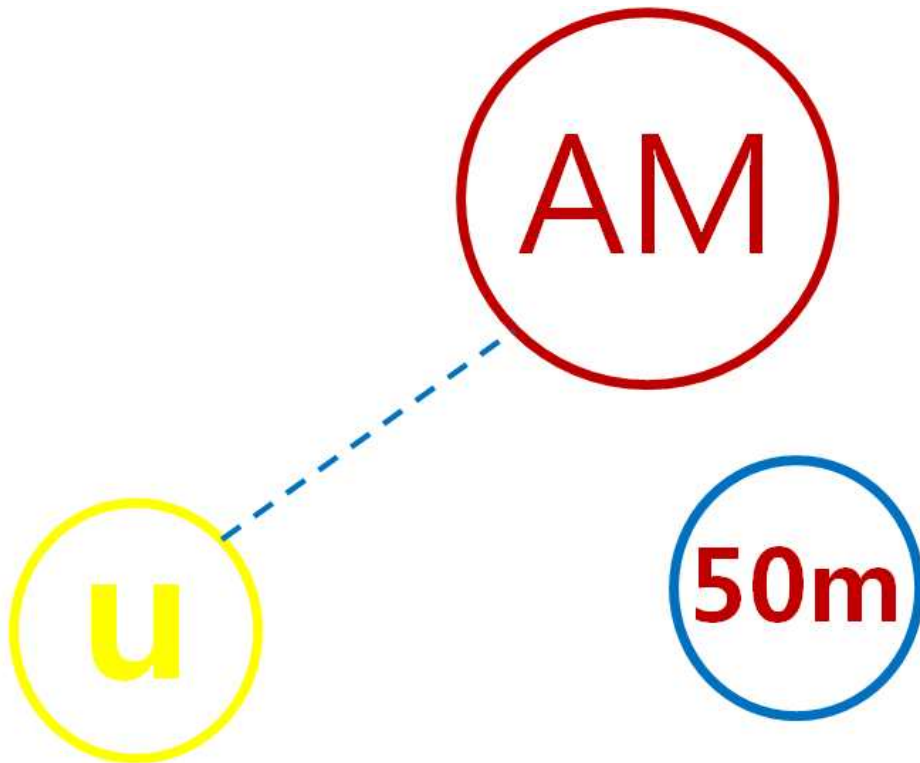


〈그림 8〉 거리에 따른 위험의 구별 표시(100m)



두 번째, 100미터의 거리에서는 사용자에게 이동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이는 위험의 정도가 중하므로 회피 디렉션 제공을 통해 사용자를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회피 디렉션은 주변 근접거리에 있는 안전장소로 사용자를 도착하게 하여 구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안전장소의 종류로는 주변의 경찰서, 지구대, 방범 관련 시설, 공공기관 등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는 향후 지속적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9> 거리에 따른 위험의 구별 표시(50m)



세 번째, 50미터의 거리가 표시되면 적색으로 변한 거리표시 수치가 점멸되고, 회피 디렉션의 제공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근접지역 112 상황실과 순찰차에 전자발찌 위치정보 근접으로 인한 긴급신고가 되고, 인근 순찰차는 사용자의 위치로 즉시 출동을 하여 전자발찌 접근 이전에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 3. 요청기반 설계(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전자발찌 위치정보의 선택적 노출에 관한 솔루션)

#### 1) 사용자정보 기준

이 연구의 모델은 사용자정보를 중심으로 설계하는 방식이므로 앱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이다.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전자발찌 위치정보가 제공될 경우 사용자들의 혼란과 불안, 그리고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역공격 등 기타 인권침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자정보를 중심으로 사용자가 속한 환경정보와 이들의 결합정보를 적절히 판단하여 전자발찌 위치정보 제공의 판단 자료로 활용한다.

사용자정보를 통해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는 주로 동일 장소의 사용자 수와 사용자가 위치한 장소가 선택적 공개의 결정 요소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전자발찌 위치정보가 공개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중밀집장소에서도 위치정보는 공개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2) 환경정보 기준

환경정보는 주로 단순히 장소적 의미를 벗어나 환경적으로 범죄예방과 관련된 시설, 장비 등이 설치 되어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기초로 위치정보 공개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설계로 CCTV 설치와 안전한 길, 밤길 안전도우미 등 다양한 범죄예방 작업이 많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개선 작업이 이루어진 구역에서는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선택적으로 노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향후 지속적 연

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위치정보의 노출을 선택할지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 3) 융합정보 기준

융합정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용자정보와 사용자를 둘러싼 환경정보를 조합·필터링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어떤 특정한 환경에 속함으로써 이 경우에는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사용자정보와 환경정보의 기준으로는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공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가령 편의점이나 기타 영업점에 위치한 경우에는 전자발찌의 위치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야간의 경우에는 CCTV가 설치된 대로변이라 하더라도 일정 조도 이하의 상황이거나,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특별한 요청 메뉴가 있는 경우는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전자발찌착용자 중에는 성범죄자신상공개가 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자기 주거지 내에 전자발찌착용자가 거주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어서 전자발찌착용자가 제한구역 이탈 없이 범행을 하는 경우에 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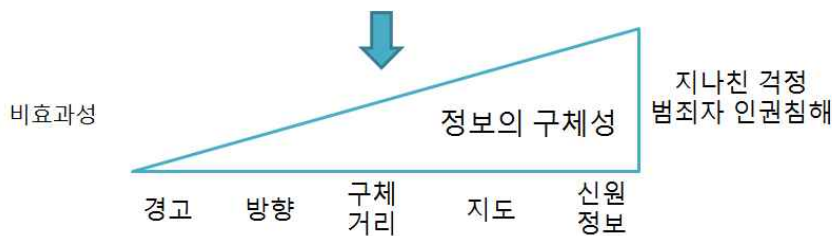
결국 융합정보를 기준으로 한 전자발찌 위치정보 공개의 선택 여부도 향후 지속적 연구를 거쳐 구체적인 환경 요소와 종합적 분석을 통해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관한 많은 관심 있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 제3절 전자발찌 위치정보 활용 디자인 고려사항

향후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한 발전적 연구를 거쳐 도입가능성에 관한 논의와 가상 Application 구현을 위한 구체적 모델을 설계할 경우 앞의 제2절에서 제안한 다양한 솔루션 외에 전자발찌 위치정보 활용 디자인 고려사항으로는, 정보의 양과 구체성에 따라 경고수준이나 전자발찌 위치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1. 정보의 구체성과의 관계

〈그림 10〉 정보의 구체성과의 관계도



위의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보의 구체성은 범죄예방의 효과와 일반시민의 걱정의 정도 및 범죄자의 인권침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구체적일수록 범죄예방의 효과는 증대되겠지만, 그와 반비례하여 일반시민으로서의 걱정의 문제, 그리고 전자발찌착용자의 인권침해는 더 커지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제공되는 정보가 단순히 경고만 표시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전자발

씨의 위치를 알 수 없으므로 이동할 방향을 몰라 오히려 불안할 수 있고 또한 자칫 전자발찌의 위치로 접근하여 위험이 증폭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거리를 직접 표시해 준다면 위험의 인식이 쉽고 직관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이 모두 지도상에 제공이 된다면 사용자는 위험의 정도를 확인하면서 이에 대응하여 스스로 위험을 회피하거나 주변 안전지대로 피신하여 구조를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심리적으로 덜 불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고위험의 경우에는 근접해있는 전자발찌착용자의 신원정보도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구현을 위한 모델 디자인 단계에서는 위의 관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립되는 효과와 인권의 문제 등에 대해 적절히 조화하여 정보의 구체성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 2. 정보의 양과의 관계

〈표 4〉 정보의 양과의 관계도

기본 정보	추가 정보	추가 정보
전자발찌 위치정보	0	
전자발찌 위치정보	환경의 안전도	0
전자발찌 위치정보	환경의 안전도	개인 예상 이동 궤적

정보의 양에 따라서도 전자발찌 위치정보의 공개 여부는 선택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에서 제안한 솔루션에 추가적으로, 전자발

씨의 위치정보에 일정 수준의 안전한 환경정보가 결합할 때는 전자발찌 위치정보는 공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전자발찌 위치정보 이외에 안전한 환경정보가 결합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만약 전자발찌 위치정보와 사용자 위치정보의 예상 이동 궤적을 제공하여 서로의 위치가 위험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아니라 반대의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자발찌 위치정보의 공개는 불필요하고 나아가 위험경고 또한 불필요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필요 이상의 전자발찌 위치정보 공개를 줄임으로써 일반시민의 지나친 걱정을 덜게 하고 더불어 전자발찌착용자의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제6장 사용자중심설계 기반 전자발찌 위치정보 활용에 대한 예상 쟁점 및 관련 기존 제 도의 도입 논거 소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범죄예방제도 중 특단의 조치로 도입된 대표적 예는 2000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sup>82)</sup>, 2008년 전자발찌제도, 2011년 성충동약물치료제도<sup>83)</sup>가 있다.

82)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상공개를 통해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억제하는 일반예방의 효과에 초점을 둔 정책이라 할 수 있다.(법무연수원, 앞의 범죄백서, 513 참조)

83) 성폭력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강화조치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으나, 2004년 유영철의 연쇄 성폭행 살인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되었다. 성폭력 범죄자에게 호르몬 조절약물을 투여하여 성범죄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2008. 10.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고, 2010. 6. 영등포 초등학교 납치 성폭행 사건(김수철 사건) 발생을 계기로 법안 심의가 신속히 이루어져, 2010. 7. 2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가 도입되어 2011. 7. 24.부터 시행되고 있다.(법무연수원, 앞의 범죄백서, 510 참조)

이 제도들의 공통점은 우리 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던져준 흉포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와 유사한 범죄환경<sup>84)</sup>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도입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성범죄를 대상으로 도입된 제도라는 특징도 있다. 그 중 신상공개제도와 성충동약물치료제도는 여전히 성범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전자발찌제도는 처음에는 성범죄를 대상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강력범죄 위주로 외연이 크게 확장되었다.

이 제도들은 도입 논의 당시에 모두 첨예한 쟁점의 대립이 있었는데 가장 상위의 쟁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헌법상 제 권리의 침해 가능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들이 도입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배경이나 논거들은 지금 이 논문이 연구하는 ‘사용자중심 설계 기반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활용한 범죄예방 모델의 연구’에도 여전히 참고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 연구는 현재 도입의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논하는 단계가 아닐 뿐 아니라 개념 도입조차 되지 않아 개념의 도입을 위한 제안에 불과한 단계로써 향후 도입가능성을 위한 발전적 연구에 동기를 부여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으므로 예상되는 쟁점과 관련 제도들의 도입 당시의 논거에 대해 대략적인 소개를 하고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향후 이 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도입가능성을 논하는 기회에 충실한 연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위 제도들의 도입 당시 논의된 쟁점을 중심으로 이 연구에 대한 예상 쟁점을 상정해 보고 기존에 도입된 제도 중 전자발찌제도를 중심으로 당시 도입 배경과 논거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84) 일반인에게는 일반예방의 효과를, 범죄인에게는 재범방지를 위한 특별예방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 제1절 사용자중심설계 기반 전자발찌 위치정보 활용에 대한 예상 쟁점 및 기존 전자발찌제도의 도입 논거

### 1. 헌법적 쟁점

전자발찌 위치정보 활용에 관한 최상위 쟁점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여 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상정할 수 있다.

참고로, 전자발찌제도 도입 당시 대두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제도라는 주장이 대표적 반대이유였고 그 외에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권, 신체의 자유,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sup>85)</sup>

이하에서는 각 쟁점에 대한 내용 소개와 함께 관련 근거 제도인 기존 전자발찌제도의 도입을 전후한 당시 논거를 간략히 소개 한다.

#### 1) 인권침해의 문제

전자발찌제도 도입 당시 대표적인 쟁점은 기계에 의해 인간이 24시간 감시를 당하므로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초기 논의과정에서는 전자발찌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 무엇보다 기계에 의한 24시간 감시가 가져올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더불어 국가에 의한 완벽한 통제 사회로의 진입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전자발찌제도의 도입을 위한

---

85) 조규범,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헌법적 소고”, 성균관법학 제19권 제3호, 2007. 12, 93-94면 참조.

구체적 입법 시도를 막고 있었다고 한다.<sup>86)</sup>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이 논문이 연구하는 ‘전자발찌 위치정보 활용’에도 여전히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이러한 비판에 대한 도입 논거를 살펴보면,

① 조규범(2007)<sup>87)</sup>은,

【전자감시는 대상자에게 사회 안에서 직업·가정생활·사회생활이라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촉진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우게 하며, 법원에서 다양한 조건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상당한 탄력성을 부여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전자감시는 범죄자에 대한 꾸준한 감시를 통해 다른 사회내 처우보다 일반시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하고 평생을 정신적 불구로, 정신적 사망 상태로 사는 것, 그것은 육체적 죽음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다... (중략) 이런 잔인무도한 인권유린의 당사자를 ‘인권’이란 성스런 범주 속에 넣어주어야 할까?”<sup>88)</sup>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일반시민의 보호를 위한 ‘전자팔찌법’의 통과를 주장한바 있다.】 라고 했고,

② 정현미(2009)<sup>89)</sup>의 연구자료 중 전자발찌제도 도입과정에 대한 내용을 보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의 도입은 최근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비롯한 성범죄의 증가와 그에 따른 불안감으로 강력한 대응을 원하는 여론에 힘입은 바 크다.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86) 김지선 등,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II)”, 166.

87) 조규범(2007), 앞의 연구서, 93.

88) 진수희, “전자팔찌는 너무나 ‘인권적’이다”, 한겨레21 제599호(2006. 3. 7.), 16. 참조

89) 정현미, 성폭력범죄대책과 전자감시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검토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 제21권 제1호, 2009. 6.,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1년부터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하였지만 범주는 증가할 뿐 그로 인한 범죄예방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경우 주민들이 동네에 성폭력범죄의 전과를 가진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들이 학교주변 등 출입을 제한해야 할 곳에 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주거지를 이전하더라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형집행 후에도 전자감시를 통하여 일정한 장소의 출입을 금하는 전자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성되었다.<sup>90)</sup> 그러나 전자팔찌에 의한 감시제도가 갖는 인권침해나 이중처벌의 문제 등과 관련한 비판에 부딪혀 법률안이 2005년 7월 14일 국회에 회부되었지만 입법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던 중 발생한 몇몇 아동성폭력 및 살해사건들이 언론을 통하여 충격을 주었다. 2006년 2월 용산에서 발생한 성폭행 전과자가 11세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 후 살해·유기한 사건, 2006년 11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 한 후 살해한 사건, 2007년 12월 안양에서 실종된 2명의 여자 초등학생들이 성폭행 등 전과 7범인 정모씨에 의해 살해된 사건, 2008년 3월 익산에서 12년 전 3차례 아동을 성폭행한 전과자가 10년간 복역한 뒤 2년 만에 또 다시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한 사건의 경우 모두 범죄자가 피해 아동의 이웃이었고 성폭력 전력이 있었지만 동네주민들은 그들에 대한 위험을 알지 못한 경우였다. 2006년 2월 용산에서 아동성폭행 후 살해한 범인

90) 성폭력범죄자 전자감시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인터넷포털사이트가 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2005년 네이버의 한나라당 성범죄자 전자감시법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찬성 80.65%, 2006년 엠파스의 전자팔찌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찬성 86%로 압도적인 찬성의견을 보였다. 이계경, 성폭력범죄의 현황과 실효적 대책을 위한 전제, 22면,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전자위치 확인제도 도입 대토론회, 2005; 디지털타임스, 2006. 12. 22, 엠파스 설문조사 참조; 정현미 (2009), 위의 연구서 주13) 참조, 326.

김모씨는 성폭행 등 전과 9범으로 사건 5개월 전 여자아이를 성추행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는데 당시 법원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선고한 바 있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재범위험성 판단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였다. 최근에 발생한 이러한 일련의 아동성폭력 및 살해사건들은 입법자와 여론을 더 자극시켰고, 결국 2007년 4월 27일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라고 한다.

위 내용을 보면 도입 당시에 인권침해 등에 대한 헌법적 문제로 제도 도입에 반대가 있었으나 당시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할 현실적 필요가 강하게 대두되어 사회방위의 목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의해 특단의 조치로 시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논거와 관련한 다른 연구의 주장을 같은 맥락에서 연결하여 살펴보면,

③ 정철호 등(2013)<sup>91)</sup>의 연구자료 중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법적 근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 법치국가 내지 헌법국가에서 여타의 사회적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을 이루는 생명을 보호하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유지·형성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근본적인 존재이유이자 기본적인 사명이다. 헌법은 제10조 이하에서 구체적인 개별 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특히 제10조 제2항에서 국민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천부적·생래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

91) 정철호·권영복,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2권 제4호, 2013, 254-255. 참조

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객관적인 가치질서와 주관적 권리로서 의미를 가지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가 실현되어야 할 공간인 사회를 보호하고 방위할 의무도 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1조는 보호관찰을 통한 특정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부가조치를 통하여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장치 부착법’은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만을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자감시제도 역시 범죄예방이나 사회방위의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특정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재사회화는 범죄예방 내지 사회방위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범죄예방이나 사회방위는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분리된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결국 ‘전자장치부착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회방위의 수단이라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 2) 이중처벌 및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등 기타 위헌성 문제

전자발찌제도는 도입 당시 논의 과정 및 도입 이후에도 이중처벌 및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라는 위헌성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sup>92)93)94)</sup>

- 92) 정신교, “특정성범죄자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쟁점”, 형사정책 제20권 제2호(2008), 292-293.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의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실행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신체에 대한 제재나 불이익처분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전자감시는 이중처벌의 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범의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전자감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재범의 잠재성은 범죄를 일으킬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출발하므로 재범이 확실한 것으로 추정하고 논리를 펼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 93) 윤영철,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비판적 소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3호(2008), 212.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보다 사법절차적 성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를 보안처분으로 보아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하였고, 여러 이유를 들어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논문이 연구하는 전자발찌 위치정보 활용은 전자발찌제도에서 더 나아가 전자발찌의 위치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이므로 향후 이에 대해 이중처벌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기존 전자발찌제도에 대해 제기된 위와 같은 여러 논란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및 선행연구의 주장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격이 강하고 국가기관이 강제로 부작의무를 부과하여 개인의 인격이나 사생활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징벌적·규제적 성격을 갖고 있어 실질적인 형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상공개제도보다 더 강력한 제재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정성폭력범죄자에게 신상공개제도와 전자감시제도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한다면, 이는 해당자에게 과도한 이중부담을 야기함으로써, 이중처벌의 문제 등에 근거한 전자감시제도의 위헌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94) 송진경,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법연구 제23권 제2호(2011), 314-315.

[헌법 헌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은 한정적 열거가 아니라 예시규정이며, 처벌에는 형사상의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집행벌, 징계벌 등 개인에게 불이익한 일체의 제재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헌법재판소는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임을 확인한 바 있다. 결국 해당 헌법조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현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일체의 제재에 대해 헌법적 차원에서 통제하겠다는 점을 천명한 것에 핵심이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12조 제1항이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등에 대한 헌법적 차원의 통제를 규정한 것은 이들 조치가 어떠한 명칭을 가지고 부과되는가를 불문하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제재이기 때문이며,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그에 따른 전자발찌의 착용도 그 성격을 형벌, 보안처분, 혹은 제3의 독립된 제재라고 보든지 간에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게 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헌법적 차원에서의 통제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전자감시부착법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에게까지 이른바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은 한번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하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해당 원칙은 법치국가의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되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의 보호를 위해 국가 형벌권을 기속한다. 따라서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자에 대해서까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고 이른바 ‘재범의 위험성’을 다시금 판단하여 전자발찌 부착의 가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 부착명령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배라고 할 것이다.]

① 대법원 판례(대판 2009. 5. 14. 2009도1947, 2009전도5)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여, 징역형을 종료한 이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성폭력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10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선고되는 법원의 부착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에서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보안처분은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성폭력범죄사건의 양형은 부착명령의 요건에 대한 심사, 그에 따른 부착명령의 선고 여부와 선고되는 부착기간의 결정 등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위 법률 제9조 제5항은 전자감시제도가 보안처분으로서 형벌과는 그 목적이나 심사대상 등을 달리하므로 이를 징역형의 대체수단으로 취급하여 함부로 형량을 감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당연한 법리를 주의적·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조항이 평등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헌법재판소 결정(헌재결 2012. 12. 27. 2011헌바89, 2010헌가82, 2011헌바393 병합)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 은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때 ‘처벌’이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

서의 과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행하는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 등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2003. 7. 24. 2001헌가25참조). 그런데 부착명령청구조항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은 책임의 한계 안에서 과거 불법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형벌이 아닌 장래 재범의 위험성을 전제로 새로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부착명령청구조항에 의하여 이미 형사처벌된 범죄행위에 대해 다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고 해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89참조),

[1] 이 사건 전자장치부착조항은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전자장치부착으로 인해 제한되는 피부착자의 자유는 자신의 위치가 24시간 국가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행동의 자유가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일 뿐 행동 자체가 금지되거나 물리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은 전자장치의 부착 후 3개월마다 가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피부착자의 개선 및 교화의 정도에 따라 불필요한 전자장치의 부착이 없도록 하는 등 전자장치부착에 따른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는 대부분 습벽에 의한 것이고 그 습벽은 단기간에 교정되지 않고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는 부착기간의 상한을 높게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 점, 날로 증가하는 성폭력범죄와 그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범죄예방 효과의 측면에서 위치추적을 통한 전자감시제도보다 덜 기본권 제한적인 수단을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조항에 의한 전자감시제도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전자장치부착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에 비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범죄자가 입는 불이익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전자장치부착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준수사항조항은 단순히 전자장치 부착만으로는 재범 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재범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부과함으로써 전자장치부착법의 입법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부착자에게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과 외출이 금지되는 시간을 지정하거나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전자감시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고 피부착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것으로서 이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다.

전자장치부착법에서는 준수사항의 부과가 개별 피부착자의 재범 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장치 부착과 더불어 준수사항 이행의무를 지게 됨으로써 피부착자가 받게 되는 기본권 제한이 적다고 볼 수 없으나, 성범죄의 습벽이 강하고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형벌로는 특별예방이나 사회방위 효과를 거두기 힘든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여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고 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

③ 선행연구의 주장(정철호·권영복, 2013)<sup>95)</sup>

【「전자장치부착법」의 입법 배경이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가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연쇄적인 흉악범죄의 발생에 대하여 엄단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을 배경으로 도입된 측면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재범의 위험성의 모호성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법은 한편으로는 이상을 추구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법이 추구하는 그러한 이상은 현실과 괴리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며, 국민의 법 감정이나 정서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사회에서는 인간의 사고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범죄들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범죄 중 상당수가 상습성 내지 재범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었으며,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는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통제 능력에 한계를 가진 국가가 핵심적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공여지책과도 같다.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정당성을 논함에 있어서 국가와 특정범죄자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관계에서만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존립근거이기도 하나 국민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객관적 가치질서로서 기본권의 또 다른 성질을 함께 고려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는 국가-특정범죄자-일반국민이라는 삼각관계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는 그 자체로서 또는 보호관찰과 함께 기본권 제한적인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형사제재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이 처벌과 보안처분을 구문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

95) 정철호·권영복, 앞의 연구자료, 264.

중처벌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처벌’의 개념에 형벌적 제재 외에 보안처분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형벌과 함께 전자감시제도를 병행한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성폭력범죄, 유괴범죄, 살인범죄 등을 범한 특정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서만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기본권 제한적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위헌성 여부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의 원리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고, 전자감시제도는 자체는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 2. 법률적 한계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전자발찌제도의 근거 법률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전자발찌 위치 정보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제16조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수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조회 또는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1. 피부착자의 특정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2. 보호관찰관이 지도·원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부칙명령 가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를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였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를 폐기하고,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
- ⑥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
1. 부칙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때
  2. 부칙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사면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때
  3. 전자장치 부착이 종료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받음이 없이 전자장치 부착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 ⑦ 그 밖에 수신자료의 보존·사용·열람·조회·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범죄자의 위치정보가 위성 등을

통해 법무부의 ‘위치추적 관제센터’로 송신되면 관제센터에서는 특정범죄자의 이동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각종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1차적으로 대응을 하고, 특정범죄자의 위치정보는 보호관찰관에게 송신되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업무에 활용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현행 법률상으로는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 중심의 범죄예방 모델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향후 발전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실행을 위한 준비단계에 관련 실정법들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 제2절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전자발찌 위치정보 공개 대상자의 엄격한 선정 기준

전자발찌 위치정보 활용의 첨예한 쟁점 사항으로 예상되는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할 방법으로는 전자발찌 위치정보 공개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엄격히 설정하여 전자발찌착용자에 대한 불필요한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필요 최소한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 1. 전자발찌착용 후 재범자

전자발찌착용자가 전자발찌를 착용 또는 훼손한 상태로 다시 법이 정한 일정한 범위의 재범을 범한 경우, 그 재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법이 정한 기타 사유로 사회에 복귀할 때는 법원은 미리 그 재범에 대한 전자발찌착용명령을 선고 하는 시점에 전자발찌 위치정보 공개 명령도 함께 선고하여 통제된 범위의 고위험으로부터 더는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사회를 방위하는데 충실히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전자발찌 위치정보 공개 명령이 선고 된다면 이것은 잠재적 일반 범죄자 및 전자발찌착용자들에게도 일반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특히 강화된 개별적 특별예방의 효과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자발찌라는 범행억제의 수단을 부과하여 범죄자에게 스스로 범죄를 억제할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또 다시 재범을 한 경우라면 국가는 사회방위와 공동체 보호, 그리고 건전한 시민의 권리 보호와 불안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고위험 전자발찌착용자의 범죄로부터 시민 개개인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충실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 2. 전자발찌 의미 이해 불능 대상자

전자발찌착용자 중에는 전자발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전자발찌 자체만으로는 범죄예방의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전자발찌 위치정보 공개 대상자로 지정하는 명령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들에 대해 전자발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전자발찌 착용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전자발찌 착용 자체는 이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 하여도 전자발찌를 통해 그들을 지도·감독하는 보호관찰관들의 노력으로 범죄예방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연구의 전자발찌 위치정보 공개 대상자로 지정을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는 전자발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자발적 범죄예방 효과는 다소 미약하다 해도 그들의 위치정보 공개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스스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그러한 대상자들로 인한 사회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전자발찌 의미 이해 불능 대상자에 대한 고찰과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선행연구<sup>96)</sup>를 살펴보면, 「전자감시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목표에 부합되는 적절한 대상자 선정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요소이다. 전자감시를 이해하고 소화해 낼 수 없는 범죄자 집단이 적절한 대상인지에 관한 문제점은 여러 연구(김일수, 2005; 조운오, 2009)에서 제기되었다. 전자감시 대상자 중 정신질환, 알코올 의존증, 정신지체로는 분류되지 않는 않지만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을 관리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은 관리·감독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이러한 유형의 대상자들은 전자감시의 영향력이 발휘되는데 한계가 따르는 전자감시에 적합하지 못한 범죄자라고 지적하였다. 전자감시가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반을 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자가 전자감시제도를 이해하고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 3. 초고위험 전자발찌 착용자

초고위험이라는 개념은 현재로서는 구체화가 불가능하다.<sup>97)</sup> 누가 초

---

96) 박선영,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Ⅰ)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0), 117; 오삼광, “현행법상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법학 제20권 제1호(2012. 5.), 331-332; 김상균,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0권 제1호(2014. 4.), 20.

97) 실무상으로는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관들은 재범의 위험성 보다는 죄질, 피해의 정도, 전과 여부와 수, 여론의 반응 등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김도현 부장판사가 2015. 4. 10. 인천지방법원 법관 워크숍에서 발표한 자료, “성폭력범죄와 그에 관한 부수처분-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제도를 중심으로-”, 17면 참조; 조종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5), 각주260 재인용.

고위험 전자발찌착용자인지에 대하여는 전자발찌착용명령을 청구하는 검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자장치부착 관련 사전조사와 더불어 충실히 대상자의 전반을 사전에 조사하여 전자발찌 착용 명령 청구와 함께 동시에 위치정보 공개 명령 청구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초고위험의 구체화를 위한 기준에 대하여는 법원, 법무부, 검찰이 서로 충분한 연구와 협의를 통해 실무적인 규정안이 마련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추상적인 개념 제시만 할뿐 구체적인 기준을 제안하지는 않는다.

## 제7장 결 론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인간의 순수한 영혼으로는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많은 흉포한 범죄를 겪었고, 그로 인해 당시 평온했던 우리의 이웃은 소중한 가족과 행복했던 보금자리를 잃었다.

그때마다 국가는 범죄예방과 재범의 방지 그리고 국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다양한 특단의 조치들을 도입해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인한 범죄는 오늘도 우리 사회에 불안의 요소로 상존하고 있고, 재범률 상승이라는 부정적 현상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자발찌 또한 당시 특정 범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국가가 국민의 보호라는 책무를 실현할 목적으로 극약처방으로 도입한 제도로써, 이는 시행 초기에는 전자발찌착용자의 범죄 억제에 큰 효과를 보였으나 2011년 이후로는 전년 대비 매년 큰 폭으로 재범률이 상승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특히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처벌을 감수하면서 범죄로 나아가는 경우나 정신질환, 알코올 의존증,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들처



럼 전자발찌의 효과가 제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전자발찌착용자가 다시 범행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선제적으로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발찌는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이동 경로 및 현재 위치는 알 수 있지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2012년 8월 서울 중곡동 부녀자 강간살인 사건처럼 외출제한명령이나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지 않고 범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국가는 이에 대비하여 위험가능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연구하고 철저히 준비한 대책은 없이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실험적인 방법으로 지능형 전자발찌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개발에 착수했다고 발표하였으나 이 지능형 전자발찌가 장래에 발생할 범죄를 정교하게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 수준의 범죄예측능력과는 무관해 보이고 지능이라는 개념의 접목이 적절할 정도의 기능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그것으로 범죄의 사전 예방이 상당할 정도로 가능한 것인지는 시행 전에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접근방식의 국가의 대응책은 철저히 검증된 실효성 측면보다는 실험적 측면이 강해 보인다. 그 이유는 최근 수년간 국가가 다양한 개선책으로 재범률 감소를 위해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상승 현상을 멈추지 않고 있고, 특히 올해에는 발찌를 착용한 상태의 범죄가 아파트단지 주변과 열차 안에서 조차도 공공연히 발생한 것을 보면 개선책의 시도는 실효성보다는 실험적이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사회가 흉포한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한 고비용의 제도가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국가 경제적으로 손해인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 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무고한 시민의 희생일 것은 명약관화하다.

모두가 주지하듯이 범죄는 사전예방이 최선이고 이는 형사정책의 궁극적 목적에 헌신한다. 사후구제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한번 발생한 범죄의 피해는 결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인간상식에 근거한 진리이다.

그러므로 전자발찌착용 특정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한 보충적 방안으로는 특정 범죄자가 범행을 결의하고 대상을 물색하는 단계에서 잠재적 범죄피해자인 시민이 스스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범죄예방 모델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 논문에서 주장한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용자중심의 범죄예방 모델에 관한 연구는 헌법적 가치 훼손의 비판 가능성과 실정법적 한계를 지닌 현 상황에서도 개념적으로 충분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범죄예방을 위한 실효적 방안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 주제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념의 틀을 벗어나 범죄예방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즉 지금까지 범죄자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잠재적 범죄피해자인 시민과 법률이 규정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중심의 범죄예방 수단을 보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특정 범죄자의 재범위험으로부터 시민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부족한 보호관찰관의 업무량 경감과 효율적 업무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전자발찌 본연의 기능과 더불어 범죄자가 재범을 결의하는데 심리적 가중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특정 범죄자의 재범 억제에 상당한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하여 정부 소관 부처가 향후 전자발찌제도의 재범률 감소와 사전

범죄예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연구를 시도해야만할 때 그 중 의미 있는 하나의 연구과제로 채택하기를 바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주제에 대해 향후 관련된 많은 지속적 연구를 통해 통제된 고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안전할 수 있는 철저히 검증된 대책을 위해 장기적인 노력과 꾸준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논문의 끝을 맺는다.

## ❖ 참고 문헌 ❖

### [단행본]

1. 권영성, 「헌법학원론」 개정판, 법문사(2010).
2. 이재상, 「형법총론」 제7판, 박영사(2011).
3. 한영수·강호성·이형섭, 「한국 전자감독제도론」 : 범죄인 위치추적과 전자발찌 운용에 관한 이론과 실무, 박영사(2013).

### [연구 자료]

1. 강은영,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와 성폭력”, 젠더리뷰(2012).
2. 강호성,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2).
3. 강호성, “전자감독제도의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형사정책 제26권 제3호(2014).
4. 광대경·김태환·차민규·홍준수, “지능형 전자발찌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2014).
5. 김광명·위대한·문승진,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스마트 전자발찌 시스템 제안”,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3).
6. 김대진·최천근·정송미, “이슈관심주기 모형을 적용한 정책변동 분석 - 강력범죄자 전자발찌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2호(2015).
7. 김상균,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0권 제1호(2014).

8. 김지선·장다혜·김정명·김성언·한영수·강호성·문희갑·권오성·김영록·최순영·박상옥,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Ⅱ)-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2014).
9. 김지수·김민곤·이정철·허만형,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형성과정 분석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model)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21권 제1호(2012).
10.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0).
11.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전자감시는 새로운 행형의 신호탄인가?”, 형사정책 제12권 제2호(2000).
12. 박선영,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Ⅰ) -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0).
13. 박정은·강석진·이경훈,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이용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12권 제2호(2012).
14. 손동권, “한국 형사정책의 이슈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3호(2009).
15. 손외철, “한국 전자감독제도의 재범방지 성과와 실효성 강화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0권 제2호(2014).
16. 송진경,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법연구 제23권 제2호(2011).
17. 오삼광, “현행법상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법학 제20권 제1호(2012).
18. 윤영철,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비판적 소고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3호(2008).

19. 이길용·박수현, “위치인식 불가의 극한상황에서 성범죄 예방 상황인지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 전자발찌 시스템”, 전자공학회 논문지 제49권 제11호(2012).
20. 정기혁, “스마트 단말을 이용한 성범죄자 위치 추적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2).
21. 정신교, “특정성범죄자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쟁점”, 형사정책 제20권 제2호(2008).
22. 정철호·권영복,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2권 제4호(2013).
23. 정현미, “성폭력범죄대책과 전자감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21권 제1호(2009).
24. 조규범,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헌법적 소고”, 성균관법학 제19권 제3호(2007).
25. 조성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쟁점에 대한 검토 -미국 성충동약물치료 주법 규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36권(2012).
26. 조종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5).
27. 진수희, “전자팔찌는 너무나 ‘인권적’이다”, 한겨레21 제599호(2006).
28. 차민규·김동희·김태환·곽대경, “전자감독제도의 실태분석을 통한 지능형 전자발찌 도입방안”,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제10권 제3호(2014).

### [자료검색 인터넷 웹 사이트]

1. DBpia(<http://www.dbpia.co.kr>)
2. Kiss(<http://kiss.kstudy.com>)
3. 교보문고스콜라(<http://scholar.dkyobobook.co.kr>)
4. LAWnB(<http://www.lawnb.com>)
5.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6. 위키피디아(<https://www.wikipedia.org>)

### [기타 자료]

1.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인터넷 홈페이지 정책자료, 위치추적 전자감독 제도 안내
2.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인터넷 홈페이지 보호관찰, 전자감독
3.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대법원 판례(2009. 5. 14. 2009도1947, 2009전도5)
7. 헌법재판소 결정(2012. 12. 27. 2011헌바89, 2010헌가82, 2011헌바393)
8. 법무연수원, “강력범죄의 현황과 대책”, 범죄백서 2012 특집(2013)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쇄살인마 유명철 사건 수사백서”(2005)

<Abstract>

**A study on the crime-prevention  
based on the user-centered design  
using the location information of ankle monitor**

Kim, Yu-Ho

Electronic Monitoring(Ankle Monitor) System was introduced as the drastic measure in respond to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sexual violence crimes on September 1, 2008 in South Korea.

It had been enforced on kidnappers, murderers and finally expanded to burglars in June, 2014.

It had showed a great effectiveness on the suppression of recidivism against the offenders in ankle monitor for the first 3 years.

However, the recidivism rates of offenders in ankle monitor have been increased sharply every year compared to last year's since then. Hence, our government tried to settle the matter with various and constant efforts, but there was no effect and it caused people to think of the system as a useless one.

Here is the question that actually the current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just indicates the whereabouts and movement route of offenders in ankle monitor, so it can't show what the offenders are doing. It is really serious problem and dangerous to ordinary people.

This study would like to suggest a new approach, the crime-prevention based on the user-centered design using the location information of



ankle monitor, to cope with the matter and it enables citizen(user) to avert the danger and protect them for themselves in advance from offenders in ankle monitor.

In addition, it will lessen the workforce of probation officers.

Therefore, this thesis aims to give the authorities a chance and motive to take the subject of this study as their one of studies, when the government has to try to lessen the recidivism rates of offenders in ankle monitor and reform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 Key Words :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nkle Monitor, Location Information of Ankle Monitor, Recidivism Rates, User-Centered Design, Crime-Prevention